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3년 3분기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Ⅰ.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23년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동향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4. 3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Ⅱ. 국가별 리콜사례

1. '23년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동향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3. 3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Ⅲ. 3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농림축산식품부

Ⅰ.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23년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동향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국가별 현황 : ('22년 3분기) 총 190건 → ('23년 3분기) 총 217건

중국 ▼

한국산 58건
'23년 3분기누계 58건
'22년 3분기누계 44건 / 연누계 60건

라벨링/포장	7
성분 부적합	16
위생	11
서류미비	2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22

대만 ▼

한국산 9건
'23년 3분기누계 9건
'22년 3분기누계 19건 / 연누계 25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3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6
기타	0

미국 ▼

한국산 115건
'23년 3분기누계 115건
'22년 3분기누계 84건 / 연누계 98건

라벨링/포장	33
성분 부적합	48
위생	14
서류미비	10
잔류농약 검출	5
기타	5

EU ▼

한국산 5건
'23년 3분기누계 5건
'22년 3분기누계 11건 / 연누계 13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3
위생	0
서류미비	2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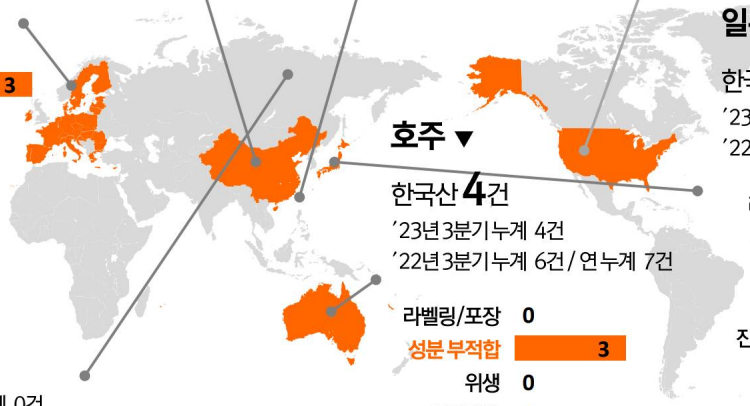

일본 ▼

한국산 26건
'23년 3분기누계 26건
'22년 3분기누계 26건 / 연누계 35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4
위생	2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2
기타	0

호주 ▼

한국산 4건
'23년 3분기누계 4건
'22년 3분기누계 6건 / 연누계 7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3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

러시아 ▼

한국산 0건
'23년 3분기누계 0건
'22년 3분기누계 0건 / 연누계 0건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품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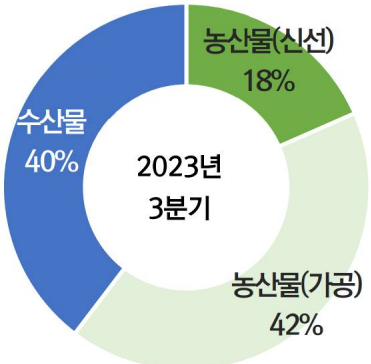

해조류 / 총 49건
미국 41건, 중국 4건,
호주 2건, EU 1건, 대만 1건

과자류 / 총 32건
미국 10건, 일본 6건,
중국 16건

채소류 / 총 11건
미국 6건, 일본 2건,
대만 3건

기타조제 농산품 / 총 29건
미국 13건, 중국 12건,
EU 2건, 대만 1건, 일본 1건

어류 / 총 20건
미국 12건, 일본 5건
중국 2건, 호주 1건

연체동물 / 총 12건
미국 7건, 일본 2건,
중국 2건, 호주 1건

※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 2023년 10월 기준, 중국의 2023년 9월 문제사례와 호주의 2023년 8-9월 문제사례는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임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미국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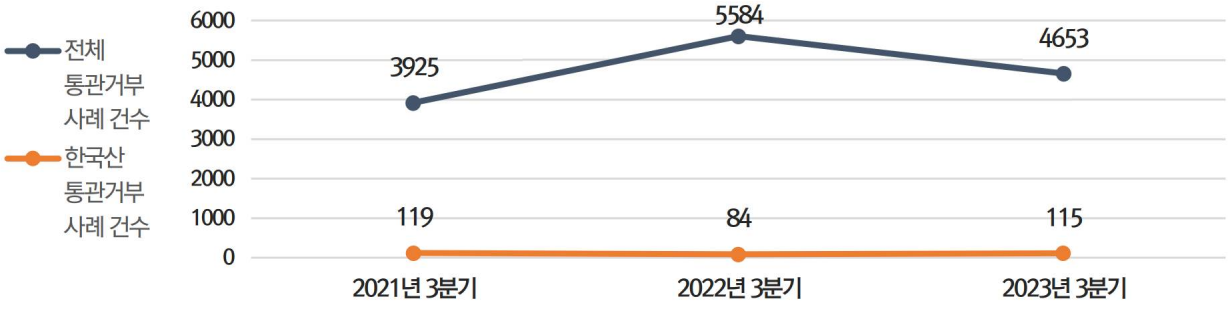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상반기 (1~6월)	83	8	91	40	3	43	40	56	96	0	53	53	123%
7월	1	0	1	7	2	6	6	1	7	-1	-1	0	17%
8월	16	0	16	26	1	27	3	4	7	-23	3	-20	-74%
9월	9	2	11	5	0	5	4	1	5	-1	1	0	0%
합계	109	10	119	78	6	84	53	62	115	-25	56	31	37%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3분기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해조류로, 김 스낵 제품 41건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으로 필수 라벨 정보의 영어 미표기,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표기 등 라벨링 문제(20건)가 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미허가 성분 검출, 서류 미비, 미등록 제조업체의 생산품, 부패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미국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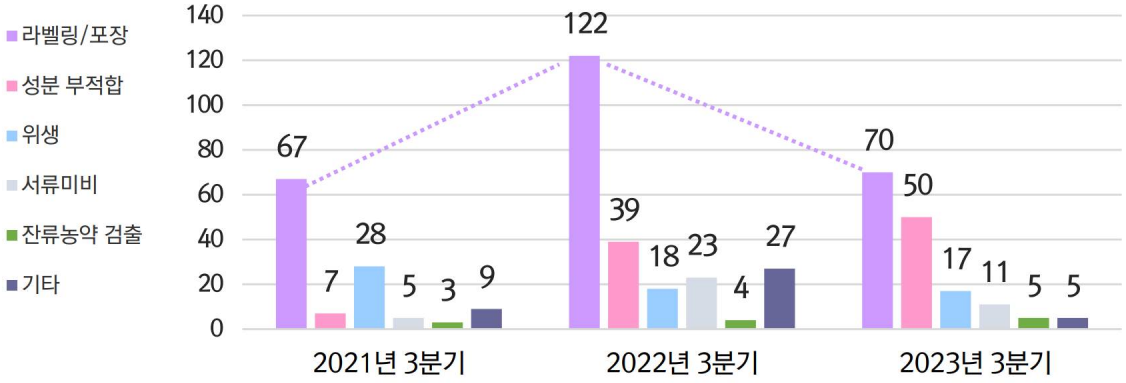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67	0	67	120	2	122	57	13	70	-63	11	-52	-43%
성분 부적합	7	0	7	36	3	39	7	43	50	-29	40	11	28%
위생	19	8	28	17	1	18	14	3	17	-3	2	-1	-6%
서류미비	5	0	5	21	2	23	1	10	11	-20	8	-12	-52%
잔류농약 검출	3	0	3	4	0	4	5	0	5	1	0	1	25%
기타	8	0	9	27	0	27	4	1	5	-23	1	-22	-81%
합계	119	8	119	225	8	233	88	70	158	-137	62	-75	-32%

출처 : 미국 FDA

- 2023년 3분기 누적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158건으로 농산물 88건, 수산물 70건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건이 감소하였으며, 수산물 관련 문제사례는 전년 대비 62건으로 크게 증가함**
- (라벨링/포장) **2023년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라벨링/포장 문제(총 70건)로 모두 다양한 유형의 라벨링 오류 문제로 확인되며,** 2021년 3분기와 2022년 3분기에도 라벨링/포장 문제가 주로 발생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3분기 라벨링/포장 문제는 주로 기타조제 농산품과 과자류 제품에서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표기되지 않거나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 외에도 주요 알레르겐 성분 또는 영양소 정보 등의 미기재, 각 성분의 통칭 및 관용명 미표기 등 미국의 식품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라벨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식품 라벨링 관련 세부 규정 내용은 https://www.fda.gov/media/81606/download 에서 확인할 수 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중국

※중국은 2023년 9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3분기 통계 수치는 1월~8월 수치만 반영됨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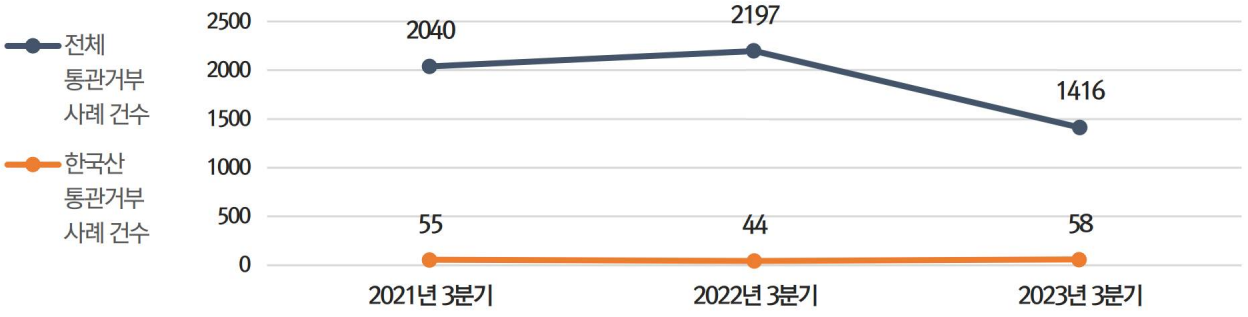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상반기 (1~6월)	7	21	28	27	13	40	26	8	34	-1	-5	-6	-15%
7월	5	3	8	0	1	1	2	0	2	2	-1	1	100%
8월	9	1	10	0	2	2	22	0	24	22	-2	20	1100%
9월	7	2	9	1	0	1	0	0	0	-1	0	-1	-100%
합계	28	27	55	28	16	44	50	8	58	22	-8	14	32%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3분기까지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과자류로 비타민C 캔디 제품과 과일야채맛 플레이크 형태의 제품에서 10건의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 과자류 제품에서 성분 부적합 문제, 위생 문제, 서류 미비 문제가 확인됨
- 다음으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총 12건)으로, 고체 음료, 효소,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류이며 주로 곰팡이수 또는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로 인한 위생 문제와 라벨 불합격 문제가 확인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중국은 2023년 9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3분기 통계 수치는 1월~8월 수치만 반영됨

중국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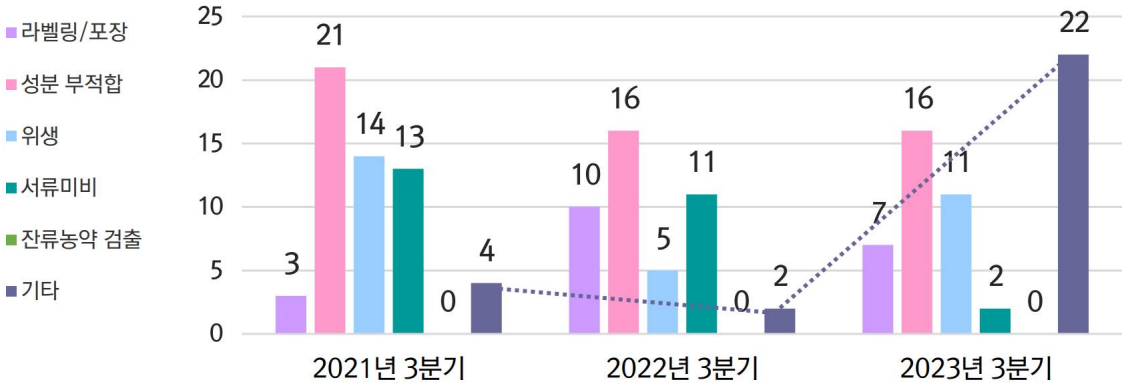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3	0	3	10	0	10	7	0	7	-3	0	-3	-30%
성분 부적합	5	16	21	13	3	16	16	0	16	3	-3	0	-
위생	8	6	14	2	3	5	6	5	11	4	2	6	120%
서류미비	10	3	13	2	9	11	1	1	2	-1	-8	-9	-82%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2	2	4	1	1	2	20	2	22	19	1	20	1000%
합계	28	27	55	28	16	44	50	8	58	22	-8	14	32%

출처 : 중국 해관총서

- 2023년 3분기 누적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58건으로, 농산물 50건, 수산물 8건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이 증가하였으며, 수산물 관련 문제사례는 전년 대비 감소함**
- (기타)2023년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총 22건의 문제사례가 확인된 기타 문제로, 세부 사유로는 검역 승인을 얻지 못한 사례가 11건,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불합격 문제 사례가 11건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검역 승인을 얻지 못한 문제사례는 2023년 2월 7건, 6월 2건, 7월 1건, 8월 1건이 확인됨**. 이는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 수입 시 필요한 검역허가증명서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됨
- **중국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 규정은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에서 확인 가능함**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대만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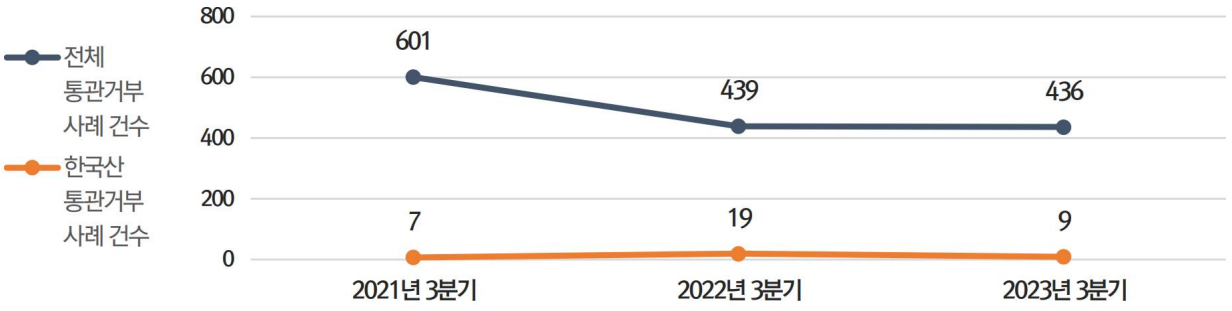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상반기 (1~6월)	3	0	3	14	0	14	6	0	6	-8	0	-8	-57%
7월	0	0	0	1	0	1	1	0	1	0	0	0	-
8월	2	0	2	2	0	2	1	0	1	-1	0	-1	-50%
9월	1	1	2	2	0	2	0	1	1	-2	1	-1	-50%
합계	6	1	7	19	0	19	8	1	9	-11	1	-10	-53%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3분기까지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채소류로, 배추와 멜론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성분, 양념 깻잎 제품에서 소브산 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첨가물 성분이 확인됨
- 이외 과실류 2건, 기타조제 농산품, 면류, 해조류, 소스류가 각 1건 씩 확인되었으며, 해조류 제품은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 검출 문제, 그 외 제품은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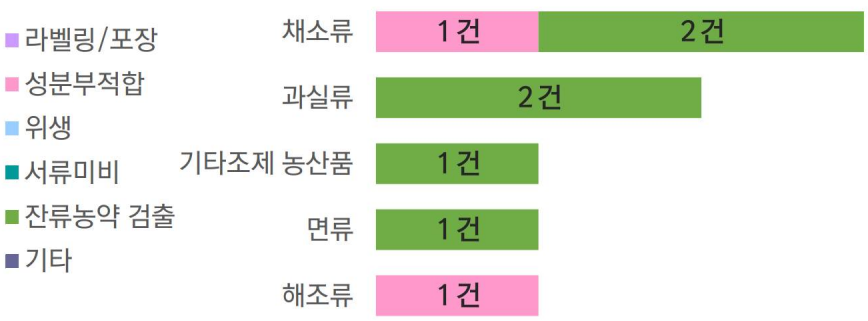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대만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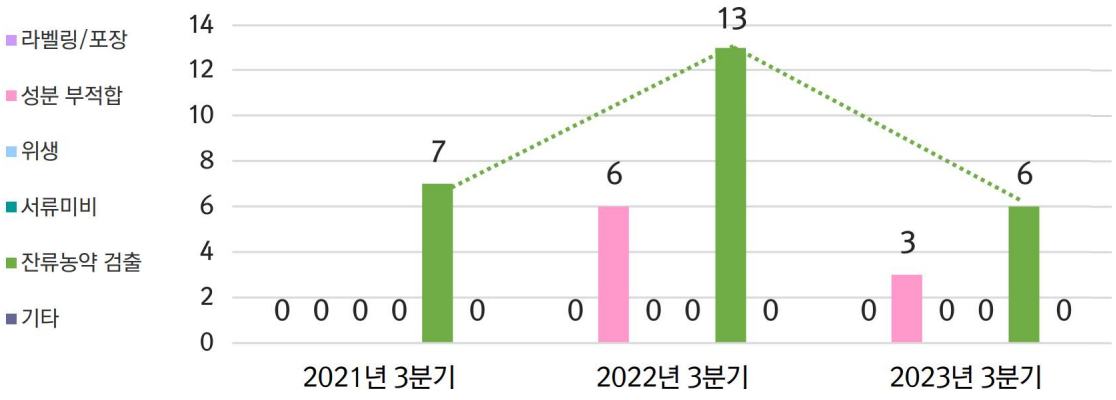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0	0	0	6	0	6	2	1	3	-4	1	-3	-50%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6	1	7	13	0	13	6	0	6	-7	0	-7	-54%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
합계	6	1	7	19	0	19	8	1	9	-11	1	-10	-53%

출처 : 대만 FDA

- 2023년 3분기 누적 대만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9건으로,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건이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관련 문제사례의 발생 건수가 주로 감소함**
- **(잔류농약 검출) 2023년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잔류농약 검출 문제(총 6건)로 모두 농산물 품목의 문제 사례였으며, 2021년 및 2022년 3분기에도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문제가 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3분기 한국산 식품의 잔류농약 검출 문제는 신선 식품인 과실류와 채소류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류인 기타조제 농산품과 면류 제품에서 각 1건 씩 확인됨
- **대만 FDA는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을 통해 농약별 잔류 허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 내용은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에서확인할수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일본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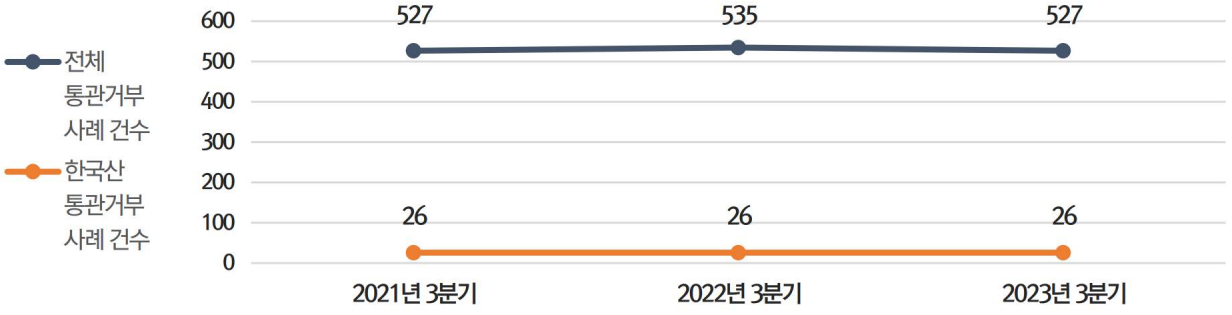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상반기 (1~6월)	17	2	19	16	4	20	15	6	21	-1	2	1	5%
7월	0	1	1	3	0	3	1	0	1	-2	0	-2	-200%
8월	3	1	4	3	0	3	0	2	2	-3	2	-1	-50%
9월	0	2	2	0	0	0	0	2	2	0	2	2	100%
합계	20	6	26	22	4	26	16	10	26	-6	6	0	-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3분기까지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과자류로, 냉동 디저트 제품에서 대장균 또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거나 일부 스낵류 제품에서 시안화산 등의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통관거부 조치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어류로 냉동된 장어 가공품, 냉동 젓갈 제품, 참치 조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 또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통관거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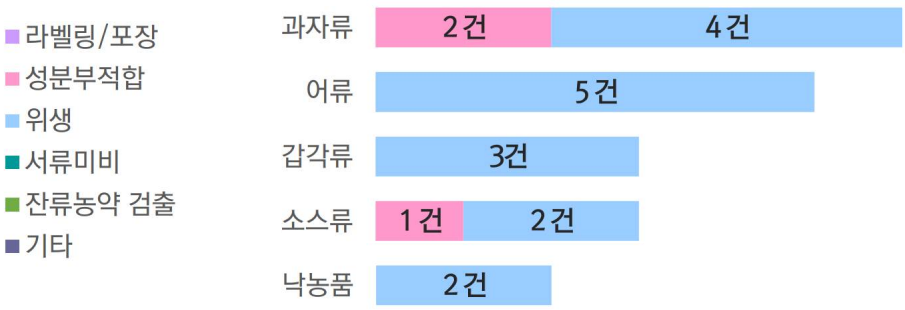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일본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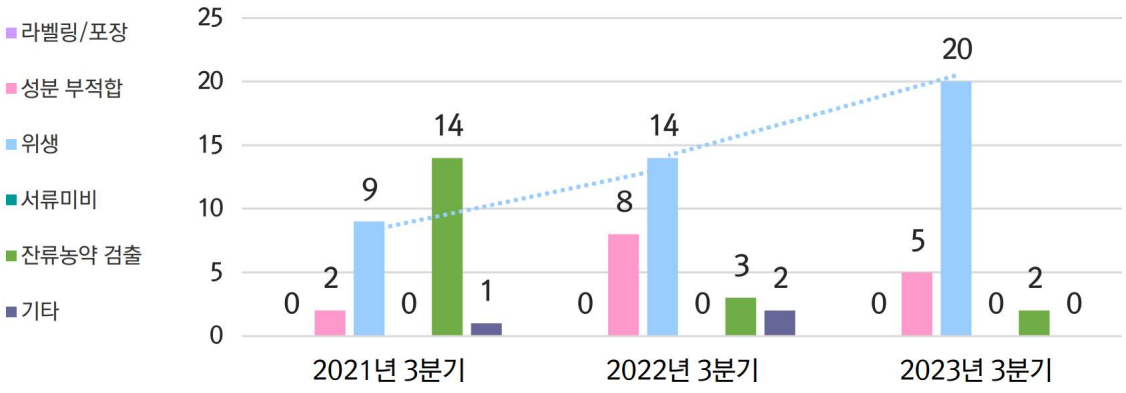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2	0	2	7	1	8	4	1	5	-3	0	-3	-60%
위생	3	6	9	11	3	14	10	10	20	-1	7	6	30%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14	0	14	3	0	3	2	0	2	-1	0	-1	-50%
기타	1	0	1	2	0	2	0	0	0	-2	0	-2	-200%
합계	20	6	26	23	4	27	16	11	27	-7	7	0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2023년 3분기 누적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27건으로 농산물 16건, 수산물 11건임. 총 문제사례 건수는 전년 동기 수치와 동일하며, 농산물의 문제사례가 감소하고 수산물의 문제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위생) 2023년 3분기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위생 문제로(총 20건), 2022년 3분기에도 위생 문제로 인한 문제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3분기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의 위생 문제는 주로 냉동식품류 제품에서 대장균, 세균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 일본은 《식품별 규격기준》을 통해 냉동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 내용은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EU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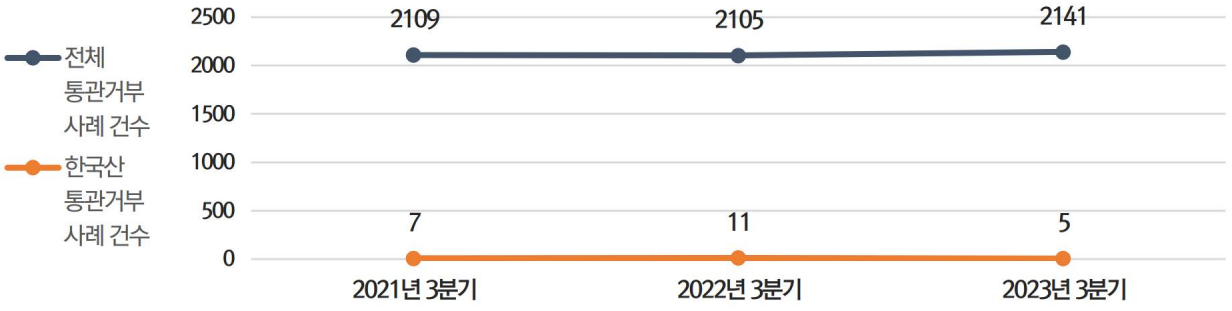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상반기 (1~6월)	1	1	2	8	2	10	4	1	5	-4	-1	-5	-100%
7월	0	0	0	1	0	1	0	0	0	-1	0	-1	-100%
8월	2	0	2	0	0	0	0	0	0	0	0	0	-
9월	1	2	3	0	0	0	0	0	0	0	0	0	-
합계	4	3	7	9	2	11	4	1	5	-5	-1	-6	-120%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3분기까지 EU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은 기타조제 농산품과 면류 제품으로, 식품보충제 제품에서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및 색소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면류 제품이 라벨과 제출 서류가 불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통관거부 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해조류로, 김스낵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요오드 성분이 검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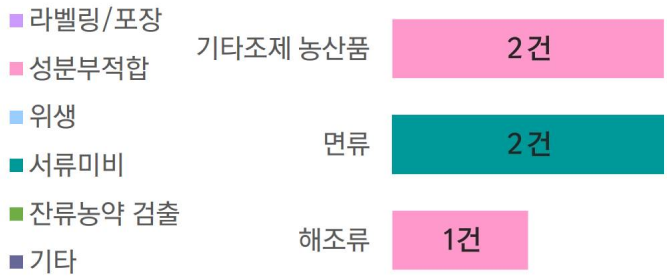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EU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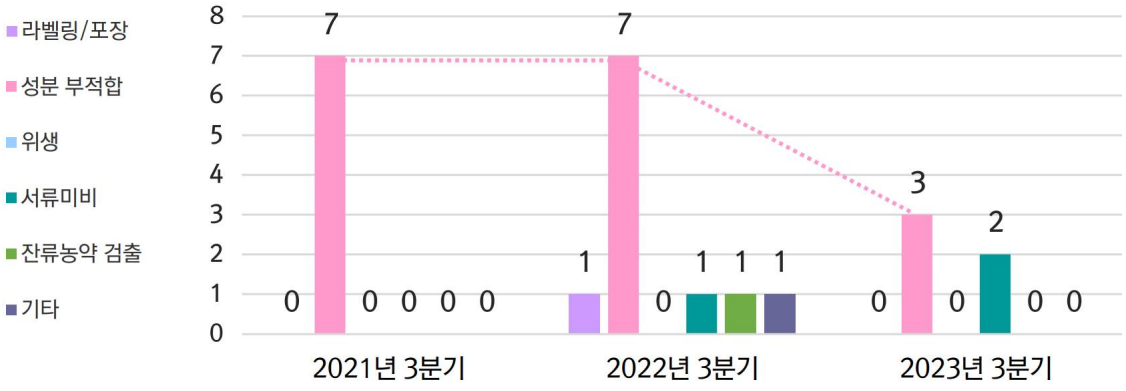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1	0	1	0	0	0	-1	0	-1	-100%
성분 부적합	4	3	7	6	1	7	2	1	3	-4	0	-4	-133%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1	0	1	2	0	2	1	0	1	50%
잔류농약 검출	0	0	0	1	0	1	0	0	0	-1	0	-1	-100%
기타	0	0	0	0	1	1	0	0	0	0	-1	-1	-100%
합계	4	3	7	9	2	11	4	1	5	-5	-1	-6	-120%

출처 : RASFF(유럽연합 식품안전정책 포탈)

- 2023년 3분기 누적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5건으로 주로 농산물 제품의 문제사례로 확인되며,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건 감소함
- (성분 부적합) 2023년 3분기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성분 부적합 문제(총 3건)로,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한국산 식품은 EU에서 주로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해 통관거부 된 것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3분기 EU에서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는 식품 보충제 제품에서 미승인된 성분이 검출되거나 김스낵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요오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
- EU에서 규정하는 식품에 허용된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 내용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8R1333-20201223 에서 확인할 수 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호주

※호주는 2023년 8월 및 9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3분기 통계 수치는 1월~7월 수치만 반영됨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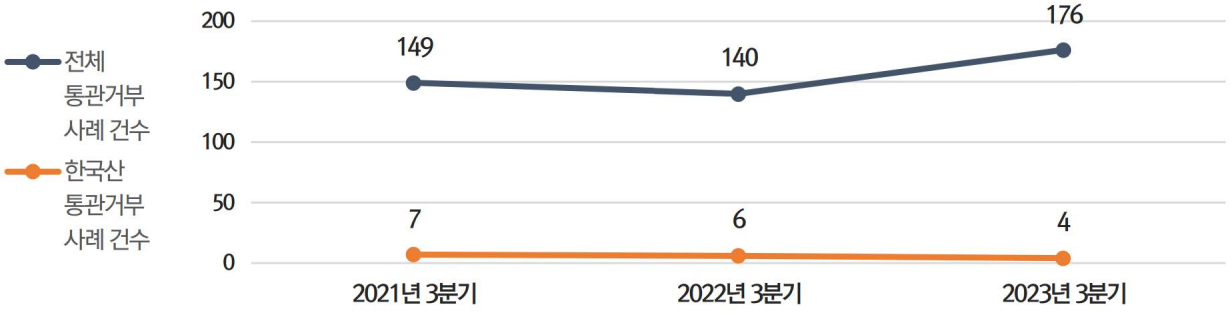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상반기 (1~6월)	1	3	4	1	3	4	0	4	4	-1	1	0	-
7월	0	1	1	0	0	0	0	0	0	0	0	0	-
8월	0	1	1	0	1	1	0	0	0	0	-1	-1	-100%
9월	0	1	1	1	0	1	0	0	0	-1	0	-1	-100%
합계	1	6	7	2	4	6	0	4	4	-2	0	-2	-50%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3분기까지 호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해조류로, 건조 미역 및 다시마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요오드 성분이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 이외 어류 1건과 연체동물 1건이 호주에서 통관거부 되었으며, 냉동 어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히스타민 성분이 검출되거나 건조 굴 제품이 호주에서 수입이 승인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거부 조치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호주

※호주는 2023년 8월 및 9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2분기 통계 수치는 1월~7월 수치만 반영됨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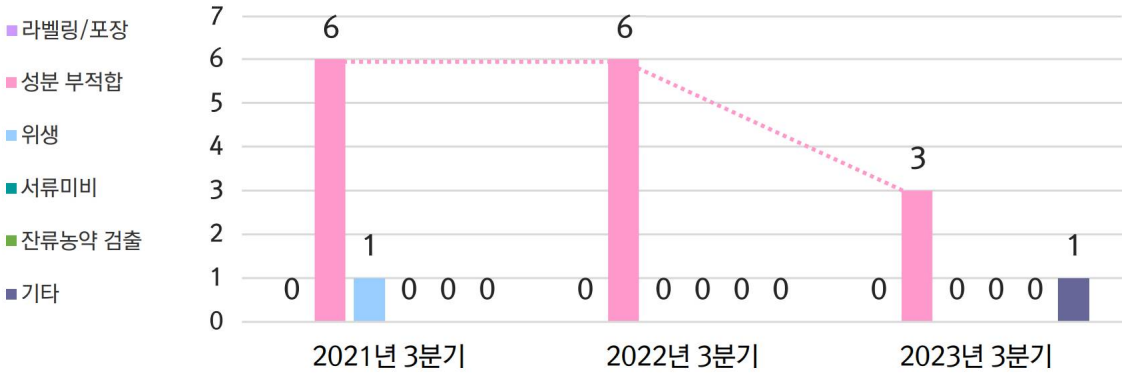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1	5	6	2	4	6	0	3	3	-2	-1	-3	-100%
위생	0	1	1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0	0	0	0	0	0	0	1	1	0	1	1	100%
합계	1	6	7	2	4	6	0	4	4	-2	0	-2	-50%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청

- 2023년 3분기 누적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4건으로 모두 수산물 제품이며, 총 문제 건수는 2022년 3분기 발생 건수 보다 2건 감소함
- (성분 부적합) 2023년 3분기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성분 부적합 문제로 총 발생 건수는 3건이며, 지난 3개년 호주로 수출된 한국 수산물 제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가 호주의 수입 통관거부 조치 주요 문제사유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3분기 호주에서 통관거부 된 한국산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는 주로 해조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오드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 호주에서 수입 해조류 품목에 적용하는 성분 기준의 규정 사항은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rown-seaweed 에서 확인할 수 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①[라벨링/포장]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가.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21 CFR 101.15(c)	9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3건
농산물	채소류			3건
농산물	소스류			1건
임산물	버섯류(임산물)			1건
수산물	어류			1건
농산물	과자류			8건
수산물	기타 수산동물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나. 각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U.S.C §343(i)	4건
농산물	연체동물			2건
농산물	어류			1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다.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U.S.C §343(a)	1건
농산물	연체동물			1건
농산물	인삼류	라.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U.S.C §352(f)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마.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U.S.C §343(q)	5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2건
농산물	인삼류			4건
수산물	연체동물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바.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U.S.C §343(w)	2건
수산물	연체동물			1건
수산물	어류			1건
농산물	면류			1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사. 성분, 중량 미표기	U.S.C §343(e)	1건
농산물	과자류	아.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U.S.C §343(e)	8건
수산물	연체동물	자. 라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기 어려움	U.S.C §343(f)(1)(B)	2건
농산물	과자류	차. 미승인 영양소 및 건강 정보 표기	21CFR101.13 21CFR101.14	2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카. '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를 확인할 수 없음	U.S.C §343(s) U.S.C §343(q)(f)	1건
수산물	연체동물	타. 인공 색소 성분 미표기	U.S.C §343(k)	2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②[성분부적합]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가. 독성물질/독성물질(납) 검출	U.S.C §342(a)(1), (2)	1건
수산물	해조류			41건
농산물	인삼류	나. 승인 받지 못한 신약 포함	U.S.C §381(a)(3)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1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1건
농산물	과자류	다. 유해색소 함유	U.S.C §342(c)	2건
농산물	연체동물			2건
농산물	채소류			1건

③[위생]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가.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 검출	U.S.C §342(a)(1), (2)	8건
수산물	수산부산물			1건
수산물	연체동물			2건
농산물	인삼류	나.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 및 포장됨	U.S.C §342(a)(4)	6건

④[잔류농약 검출]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채소류	가.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U.S.C §342(a)(2)(B), 40 CFR Part 180	4건
임산물	버섯류(임산물)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⑤ [서류]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어류	가.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U.S.C §381(q)(1), (2)	10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1건

⑥ [기타]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21 CFR part 1 subpart L	1건
임산물	버섯류(임산물)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나.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U.S.C §342(a)(3),(4)	1건
수산물	어류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다. 제조업체가 저산 통조림식품이나 산화 식품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음	CFR §180.25(c)(1)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가. 필수 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21 CFR 101.15(c)
내용	21 CFR 101.15 식품; 필수 정보의 명명 (Food; prominence of required statements) (c) (1) 라벨 또는 라벨 표시 행위는 당국 지침에 따라 모든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가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단, 푸에르토리코 공화국의 영토 또는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영토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그 지역의 주언어가 영어를 대체할 수 있음) (2) 라벨에 영문명으로 대표할 수 없는 외국어가 사용될 경우, 관련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는 외국어로 표시함
URL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01.15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관련 조항
(1) 라벨에 표시되는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2)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외국어가 포함될 경우, 해당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입 식품 등
관련 조항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됨)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는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3)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 나. 각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i)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1) 라벨에 정의 및 동일성 규격 표시가 부재할 경우 (1) 식품의 통칭 혹은 관용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2) 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제조된 경우 각 성분의 통칭 혹은 관용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만약 해당 식품이 채소 혹은 과일 주스 함유 음료일 경우 식품 내 함유되어 있는 과일 혹은 채소 주스의 총 비율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 379e(c)에 해당하지 않는 향료, 색소 등은 별도의 명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만약 379e(c)에 해당하지 않는 향료, 색소 등이 각각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향료 혹은 색소로 별도의 라벨링이 요구됨. (2)의 요건 준수가 실행 불가하거나 사기 혹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경우에는 면제됨 2) 중량, 계량 또는 개수 측면에서 내용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포장 형태인 경우, 합리적인 변형이 허용되며 소형포장에 대한 예외는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의 명칭은 법이나 규정에 의거한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통상적인 명칭이 없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야 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라벨링/포장]_다.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a)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a) 허위 또는 오기 라벨 (1) 해당 라벨이 특정 상황에서 허위이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2) 비타민 또는 미네랄 식품(해당 법령의 제 350조 기준)의 경우, 광고가 내용적 측면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법령 제 350조 (b)(2)항을 위반한 라벨일 경우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제품명 또는 식품 종류 - 순중량 - 영양성분표 - 성분 및 알레르겐 표시 문구 -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제품명 - 식품유형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유통기한 -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영양성분 - 용기 · 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표시사항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라벨링/포장]_라. 사용법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52(f)
내용	U.S.C §352 허위표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Misbranded drugs and devices)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f) 사용법(복용법) 및 경고표시 (1) 적절한 사용 지침(사용법)이 없는 경우 (2) 병리학적 상태나 어린이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한 적절한 경고 또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지 않은 용량이나 투여 방법 또는 적용 기간에 대한 적절한 경고가 없는 경우 단, 모든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적용되는 이 단락 (1)항의 요구 사항이 공중 보건 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해당 의약품 또는 장치를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함 (진단용 의료 기기와 관련된 규정 내용 생략) ※ 해당 사례는 건조 인삼 관련 제품 사례로,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으로 수출된 제품에 적용된 규정으로 파악됨.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원료를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URL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V-partA-sec352.ht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분류
건강보조식품
관련 조항(필수 표기 항목)
- 제품명(건강보조식품명) - 내용량(건강보조식품의 양) - 영양성분표 - 성분표 -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분류
건강보조식품
관련 조항(필수 표기 항목)
-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 제품명 - 업소명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내용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원료명 및 함량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마.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포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q)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q) 식품영양정보 (1) 라벨 혹은 라벨링에 하기의 영양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A) (i) 통상소비량(serving size) 및 해당 식품에 적합한 가정 기준 표시 제공량, 혹은 (ii) 식품 사용 일회 제공량이 통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일반 가정 식품 제공량 표시 측정 단위 (B) 용기 당 분량 수 혹은 다른 측정 단위 (C) 총 열량 (i) 모든 열량원 유래 (ii) 총 지방 유래 식품의 각 일회 제공량 혹은 다른 측정단위 내에서 (D) 하기의 영양소 함량 : 각 1회 제공량 혹은 다른 측정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총단백질 (E) 건강식단규범(Healthy Dietary Practices)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장관(Secretary)의 판단이 있을 경우, 라벨 혹은 라벨링에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혹은 다른 영양소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라벨링 규정

관련 조항

영양성분표에는 1회 권장섭취량, 총분량(~회분), 총 열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 첨가당, 비타민, 미네랄, 기타 성분 등을 포함해야 함

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 Daily Value*
Total Fat 8g	**10%**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3%**
Dietary Fiber 4g	**14%**
Total Sugars 12g	
Includes 10g Added Sugars	**20%**
Protein 3g	
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40mg	6%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한국 라벨링 규정

관련 조항

영양성분표에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 총열량,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등을 포함해야 함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라벨링/포장]_바.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w)
내용	– 알레르겐 필수 표시대상 : 우유, 계란, 어류,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2023년 1월 1일부로 추가) ※ 미국, 2023년 1월부터 참깨 알레르기 성분 표시 필수 –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을 표시해야 함 – 생선과 갑각류의 경우 그 종류(예. 넙치, 대구, 게, 새우 등)를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 정보는 제품 라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명 바로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함유(Contain)' 문구와 함께 성분목록 바로 뒤 또는 옆에 표시할 수 있음 – 제품 라벨에 필수 알레르겐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차 접촉으로 인해 우연히 식품 알레르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불량품으로 간주되어 회수, 수입거부, 압류 등에 처할 수 있음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21-chapter9-subchapter4&saved=%7CZ3JhbnVsZWlkOlVTQy1wcmVsaW0tdGl0bGUyMS1zZWN0aW9uMzQy%7C%7C%7C0%7Cfalse%7Cprelim&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대상 : 우유, 계란, 어류,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2023년 1월 1일부로 추가)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전복·홍합),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 10mg/kg 이상 함유)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라벨링/포장]_사. 성분 및 중량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e)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e) 패키지 양식 (1) 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사업장, (2) 중량, 계량 또는 개수 측면에서 내용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포장 형태인 경우, 합리적인 변형이 허용되며 소형 포장에 대한 예외는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성분(일부) - 성분 정보는 원료 정보와 같은 면에 기입되어야 함 - 칼로리, 용기 당 제공량 또는 1회 제공량의 표기 글자 크기를 키우고 진하게 하여 강조해야 함 - 설탕의 양(g)과 비율(%)을 필수 표시해야 함 중량(일부) - 용량의 단위는 ml와 pound 단위를 병기 해야 함 - 순중량 정보는 패키지 내부의 식품 용량, 중량, 숫자 형태로 표기되어야 함 - 용량은 순중량으로만 나타내야 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성분명 및 함량 –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성분 강조 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성분 강조 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아.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e)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e) (2) 중량, 계량 또는 개수 측면에서 내용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포장 형태인 경우, 합리적인 변형이 허용되며 소형 포장에 대한 예외는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소형 포장물에 대한 면제가 설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량, 치수 또는 개수로 내용물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자. 라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음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f)(1)(B)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f) 라벨 정보의 명확성 – 당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라벨에 표시해야하는 모든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가 다른 단어, 문장, 디자인 또는 장치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 그리고 해당 용어가 일반적인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구매 및 사용의 일반 조건 하에서)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관련 조항
(1) 라벨에 표시되는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2)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외국어가 포함될 경우, 해당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입 식품 등
관련 조항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됨)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는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3)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라벨링/포장]_차. 미승인 영양소 및 건강 정보 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21CFR101.13, 21CFR101.14
내용	– 품목 : 보충 영양소 함유 식품(인공 감미료 함유 또는 미함유) 1) 영양소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 규정 – 제품 포장재의 전면표기부분(Principal Display Panel) 또는 정보표기면(Information Panel)에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 성분에 대한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를 기재할 수 있음 – FDA 에서는 강조표시 (Claims)에 사용이 허가된 영양소의 종류와 포장재에 표기할 수 있는 용어 및 기준,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1)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 규정 – FDA에서 허가하고 있는 건강 강조표시 (특정 영양성분과 질병 간의 상관 관계가 인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들이 규정되어 있음 – FDA에서 허가하고 있는 건강 강조표시 이외에, 자격조건을 갖춘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 문구를 제품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FDA 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취득해야 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1) 영양소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 규정
- Calories, Total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Sodium, Sugars의 경우, 'Free', 'low', 'reduced'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있음
- 예)'Fat Free', 'Sugar Free', 'Cholesterol Free', 'Low Sodium'

2)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 규정
- FDA에서 허가하고 있는 건강 강조표시 (특정 영양성분과 질병 간의 상관 관계가 인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들이 규정되어 있음
- 예) 'Three grams of soluble fiber from oatmeal daily in a diet low in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may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This cereal has 2 grams per serving.'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1) 영양 강조 표시 규정
-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 정보 강조 표시 규정
- (가)「식품위생법」에 의한 특수영양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과 관련된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카. '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 확인 불가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s), U.S.C §343(q)(f)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s) 식이보조제 (2)(B) 식이 보충제의 라벨 또는 라벨 표시가 해당 성분의 이름으로 수정될 수 있는 "영양 보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q)(f) 식이보조제 제품은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함 (i) 영양정보는 제품에 상당한 양으로 존재하고 일일 섭취 권장량이 설정된 식이 성분을 나열해야 하지만, 식이 성분이 상당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열할 필요 없으며, 다른 식이 성분을 나열해야 함 (ii) 식이 성분 목록에는 1 회 제공량당 해당 성분의 양이 포함되어야 함 (iii) 식이 성분 목록에는 식이 성분의 출처가 포함될 수 있음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의 일반명 또는 통상명이 있어야 함 –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조된 경우 각 재료의 일반명 및 통상명이 정보 표시면에 적절히 눈에 잘 띄는 문구로 표시해야 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이보조제 표시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된 내용 없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타. 인공 색소 성분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k)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k) 인공 향료, 인공 착색제 또는 화학 방부제 인공 향료, 인공 착색제 또는 화학 방부제를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라벨에 기재하지 않은 제품은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단, 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식품은 면제됨 (*) 색소 첨가물 법, 규정과 지침(Color Additive Laws, Regulations, and Guidance) 색소 첨가물은 라벨 'Ingredient Lists'에 표기되어야 하며, 색소 첨가물 함량이 많은 성분 순으로 표기되어야 함. FDA의 인증을 받은 색소 첨가물은 FD&C Blue No.1 또는 Blue 1으로 세부 명칭 또는 약어로 작성해야 함. 반면, 인증 면제된 색소 첨가물은 'artificial colors', 'artificial color added', 'color added' 등의 용어로 표기 가능함. 카민(Carmine), 코치닐(Cochineal) 추출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에 성분명을 표기해야 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https://www.fda.gov/industry/color-additives/color-additive-laws-regulations-and-guidance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표기 유형 ① FDA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색소 (예시) Ingredients : 색소 명칭 표기 – 표기 유형 ② FDA 인증 면제 색소 (예시) Ingredients : 'artificial colors', 'artificial color added', 'color added'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표기 유형 ① 색소 종류에 따라 명칭, 용도, 약어 등 표기 (예시) 사카린나트륨(감미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가. 독성물질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1), (2)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 물질 또는 첨가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 ※ FDA의 「Food Chemical Safety」에 따르면, FDA는 식품 포장, 보관 또는 기타 취급을 통해 식품 성분 및 식품 접촉 물질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품 공급망 단계의 화학 오염 물질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조치를 취함. 이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화학 오염 물질로는 환경 오염 물질(중금속 오염물질, 공정 오염 물질)과 농약 성분 등이 포함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나. 승인받지 못한 신약 포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81(a)(3)
내용	U.S.C §381수입 수출(Imports and exports) (a) 수입품; 등록된 외국 시설 리스트; 등록되지 않은 외국 시설의 샘플; 시험 및 심사 거부 (3) 그러한 물품이 불량하거나, 라벨에 오기가 있거나 'U.S.C §355 신약(New drugs)' 규정을 위반한 경우, §384(a)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자가 §384(a)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1(II) 규정에 따라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된 경우, §360(bbb-8d)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성분인 경우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다. 유해색소 함유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c)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으로 간주함 (C) 색소 첨가물 본 타이틀의 섹션 379e(a)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색상 첨가제이거나 함유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 해당 법령에 의거, 사전에 FDA 인증을 받은 색소첨가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색소 첨가물은 모두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식용 색소 첨가물로 허용된 성분은 https://www.fda.gov/industry/color-additive-inventories/summary-color-additives-use-united-states-foods-drugs-cosmetics-and-medical-devices에서 확인할 수 있음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미국 색소 사용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관련 조항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첨가물은 FDA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허용된 식용 색소 목록에 포함된 식용 색소를 사용해야 함

한국 색소 사용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일반 식품
관련 조항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는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위생]_가.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1), (2)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 해당 법령에 의거, 식중독 및 음식 관련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가진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건강에 유해한 독성물질로 분류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미국 미생물 검출 규정 조항	한국 미생물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식품 일반(살균제품/분말제품 제외)
리스테리아균 검출 조항	리스테리아균 검출 조항
양성반응 시 부정·불량식품으로 규정	n(검사 시료수)=5, c(최대 허용 시료수)=0, m(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0, M(미생물 최대 허용 기준) = 10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수산물(일반식품)	수산물 (더 이상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도록 비가식부위를 제거, 세척 등 위생처리한 상태)
살모넬라균 검출 조항	살모넬라균 검출 조항
양성반응 시 부정·불량식품으로 규정	n(검사 시료수)=5, c(최대 허용 시료수)=0, m(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0/25g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_ 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 가공 및 포장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4)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미국 비위생적 제조 관련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비위생적 제조 관련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④[잔류농약 검출]_가.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2)(B), 40 CFR Part 180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으로 간주함 (a)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2)(B) Section 346a(a)에 위배되는 안전하지 않은 농약 잔류물 ※ 식품 내 농약 화학 잔류물에 대한 허용 오차 및 면제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 in food) 기준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b649316ccb17c31211db2edd81f789&mc=true&node=pt40.24.180&rgn=div5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1%20section:346a%20edition:prelim)%20OR%20(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6a)&f=treesort&num=0&edition=prelim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 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⑤ [서류] _가.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81(q)(1), (2)
내용	U.S.C §381 수입과 수출(Imports and Exports) (q) 수입식품 관련 증명서 (1) 일반 보건부 장관은 미국으로의 식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3)에 기술된 법인은 해당 식품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혹은 보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보증서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증명서 혹은 다른 보증서는 수송 관련 인증서, 해당 식품 제조, 처리, 포장 및 보관하는 인증 시설 목록 형식 혹은 보건부 장관이 명시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함 (2) 인증서 요청 고려 요소 보건부 장관은 (1)에 기술된 증명서 요구 식품 결정은 하기를 포함한 식품 위험에 근거함 (A) 해당 음식과 관련하여 알려진 안전 위험 (B) 해당 음식의 국가, 지역, 혹은 원산지와 관련하여 알려진 식품 안전 위험 (C) 보건부 장관의 과학적, 위험 기반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된 결론 (i) 해당 식품의 국가, 지역 혹은 원산지의 식품안전 프로그램, 시스템, 표준은 요건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 처리, 포장, 보관된 유사 식품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불충분함 (ii) 증명서는 보건부 장관의 식품 수입 거절 혹은 승인 결정을 보조함 (D) (7)에 확립된 처리방법에 따라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된 정보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미국 서류 규정 조항

추가 인증서 요청에 대한 조항

(1) 식품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2) 보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보증서

한국 서류 규정 조항

추가 인증서 요청에 대한 조항

(1)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2) 생산국 정부 증명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 원료 사용을 입증)
(3)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⑥ [기타] _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21 CFR part 1 subpart L
내용	Subpart L 식품 수입업체를 위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or Food Importers) § 1.502 (a) 해당 항목(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업체는 수입 식품의 해외 공급업체가 FSVP 418항(특정 식품에 대한 위해 분석 및 위해 기반 예방 통제 관련)과 419항(제품 안전 표준 관련) 및 시행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식품 생산 공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고 보장하기 위해 FSVP를 따라야 함 *수입업체는 FSVP를 준수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식품 위험성 및 공급업체의 관리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 인증, 모니터링 및 교정 조치 등을 시행하고 관련 FSVP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자에게 경고서한이 발행되거나, 수입 거절, 수입 경보 등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URL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500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⑥ [기타] _ 나.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3),(4)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URL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500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 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⑥ [기타] _ 다. 제조업체가 저산 통조림 및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미등록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CFR §180.25(c)(1)
내용	CFR §180.25 산성 식품(Acidified foods) (c) (1) 등록 미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산성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포장업을 처음 시작하는 상업 운영자는 관련 사업 진행 10일 이내에 FDA에 등록해야 함. (중략) 외국 가공업자의 경우,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FDA에 등록해야 함. 그리고 해당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상업 운영자는 일시적 중단이 아닌 경우, 관련 사업을 중단한 후 90일 이내에 FDA에 사업 중단 사실을 고지해야 함
URL	https://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SID=fea036e06a37182d500ccc0211adee50&mc=true&r=PART&n=pt21.2.108#sp21.2.108.b

미국 저산성 및 산성화 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산성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사업자는 사업 진행 10일전에 FDA에 등록해야 함 - 새로운 제품 포장 전, 필요에 따라 pH, 염분, 설탕 및 방부제 수준, 공정 시설 일자와 원료 등을 포함한 예정된 공정 정보를 FDA에 제공해야 함 - 예정 공정 과정을 준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한국 저산성 제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pH4.6을 초과하는 저산성 식품은 제품의 내용물, 가공 장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멸균 공정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 pH4.6 이하의 산성식품은 가열 등의 방법으로 살균처리 가능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중국

①[라벨링/포장]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라벨 불합격	GB 7718-2011	6건
농산물	면류			1건

②[성분부적합]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가. 검역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1건
농산물	음료류	나.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GB 2760-2014	3건
농산물		다. 치자황색소, 홍화황색 색소 사용범위 초과		1건
농산물	과실류	라.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아연, 비타민D 사용범위 초과	GB 14880-2012	1건
농산물	과자류			3건
농산물	면류	마. 수분 기준치 초과	GB17400-2015	1건
농산물	면류	바. 승인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 함유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4건
농산물	과자류			1건
농산물	당류	사. 사카린나트륨 기준치 초과	GB2760-2014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중국

③ [위생]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GB 11674-2010	1건
수산물	해조류		GB 19643-2016	3건
농산물	과자류		GB 7100-2015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나. 곰팡이수 기준치 초과	GB 7101-2022	4건
수산물	어류	다. 이물질발견	GB 10136-2015	1건
수산물	어류	라. 기생충 검출		1건

④ [서류]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자류	가. 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1건
수산물	해조류			1건

⑤ [기타]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가. 검역검증 승인을 얻지 못함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7건
수산물	연체동물			2건
농산물	면류			1건
농산물	서류			1건
농산물	과자류	나. 유통기한 초과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10건
농산물	음료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가. 라벨 불합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2011)
내용	3. 기본 요구사항 3.7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된 형태로 부착하면 안됨(스티커라벨 사용 불가) 3.8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해야 함(상표 제외). 꾸미는 역할을 하는 각종 예술적인 글씨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3.8.1 병음(발음기호)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음 표기가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게 표기되어서는 안 됨 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함. 모든 외국어 표기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상표 제외) 3.9 사전포장식품 포장재 및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35cm^2 이상이면 강제 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크기는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3.10 판매 단위의 포장에 다양한 품종, 개별 포장으로 단독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별 포장된 식품마다 따로 식품표시를 해야 함 3.11 외부 포장이 쉽게 식별할 수 있거나 외포장재를 통해 내부 포장재(용기)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강제 표시 내용 또는 일부 강제 표시 내용은 외포장재에 상응하는 내용을 중복 표시하지 않아도 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강제 표시 내용을 표시해야 함
URL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8222.html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라벨링/포장]_가. 라벨 불합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중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선포장 식품
라벨 표기 방식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된 형태로 부착하면 안 됨(스티커라벨 허용 불가)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 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적 〉35㎠인 경우 라벨 내용은 1.8㎜보다 커야 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 일자, 유통기한만 표기 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입 식품 등
라벨 표기 방식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됨)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는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3.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가. 검역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海关总署第249号令)
내용	제6장 식품의 수출입 제92조 수입한 식품 · 식품첨가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상품검사의 관련 법률 ·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한다. 수입한 식품 ·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역허가증명서를 받아야 식품 수입이 가능함) (*) 해당 사례는 검역허가가 안된 성분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식품에 대한 일반 조항을 적용
URL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621202.htm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나.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식품첨가물(GB2760-2014)
내용	– 분류 : 음료류 1) 수크랄로스 및 아세설팜칼륨 사용량 초과 – 수크랄로스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0.25g/kg (고체 음료는 용해 배수로 사용량 증가) – 아세설팜칼륨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0.3g/kg (고체 음료는 용해 배수로 사용량 증가) 2) 락색소(lac dye red) 사용량 초과 – 랙 다이 레드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0.2g/kg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3) 스테비오사이드 사용량 초과 – 스테비올배당체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0.2g/kg (스테비올로 계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1&guid=0AED8171-9242-419F-8B19-B14DBACFAAFB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나.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중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음료	발효음료류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사용 기준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사용 기준
수크랄로스 : 최대 사용량 0.25g/kg 아세설팜칼륨 : 최대 사용량 0.3g/kg	수크랄로스 : 0.4g/kg 이하 아세설팜칼륨 : 0.5g/kg 이하
적용 대상	적용 대상
풍미 음료(과일맛 음료에 한함)	기타음료
랙 다이 레드 사용 기준	락색소 사용 기준
락색소 : 최대 사용량 0.5g/kg	일반사용기준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음료	식품 (주사용 : 감미료)
스테비올배당체 사용 기준	스테비올배당체 사용 기준
최대 사용량 0.2g/kg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1. 설탕 2. 포도당 3. 물엿 4. 벌꿀류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다. 치자황색소, 홍화황색소 사용범위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식품첨가물(GB2760-2014)
내용	– 분류 : 풍미 음료(과일맛 음료에 한함) – 치자황색소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0.3g/kg – 홍화황색소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0.2g/kg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1&guid=0AED8171-9242-419F-8B19-B14DBACFAAFB

중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풍미 음료(과일맛 음료에 한함)
치자황색소, 홍화황색소 사용 기준
치자황색소 : 최대 사용량 0.3g/kg 홍화황색소 : 최대 사용량 0.2g/kg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기타음료
치자황색소, 홍화황색소 사용 기준
일반사용기준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라. 영양강화제(글루콘산아연, 비타민D) 사용범위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식품 영양강화제(GB14880-2012)
내용	– 분류 : 06.06 으깬 귀리(플레이크)를 포함한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 – 비타민D 사용기준 : 12.5 μg/kg ~ 37.5 μg/kg – 분류 : 07.03 비스킷 – 비타민D 사용기준 : 16.7 μg/kg ~ 33.3 μg/kg – 분류 : 14.02 과일 및 채소즙류 – 아연(글루콘산 아연) 사용 기준 : 3mg/kg~20mg/kg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002D3B53-DE13-42C1-B099-C57EC501138A

중국 영양강화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과자류
비타민D 사용 기준
– 시리얼 : 12.5 μg/kg ~ 37.5 μg/kg – 비스킷 : 16.7 μg/kg ~ 33.3 μg/kg
적용 대상
음료류
아연(글루콘산 아연) 사용 기준
– 음료류 : 3mg/kg~20mg/kg

한국 영양강화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모든 식품
비타민D 사용 기준
–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적용 대상
음료류
글루콘산 아연 사용 기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함 –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 시리얼류,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마. 수분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유탕면(GB17400-2015)
내용	– 분류 : 면류(유탕면) – 수분 함량 기준 : 10g/100g 이하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540AA19F-0F1A-4A8A-B7F0-27B5177F5EE8

중국 수분 함량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면류
수분 함량 기준
10g/100g 이하

한국 수분 함량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면류
수분 함량 기준
별도 기준 없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바. 승인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 함유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海关总署第249号令)
내용	제9조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특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협정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함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없는 수입식품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표하여 임시 적용하는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함 새로운 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은《식품안전법》제37조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하는 신식품 원료 위생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UR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

중국 미승인 원료 규정 조항

미승인 식품 원료의 허용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할 경우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하는
'신식품 원료 위생 행정 허가'를 취득해야 함

한국 미승인 원료 규정 조항

미승인 식품 원료의 사용 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있을 경우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 가능
- 사용 불가능 식품 원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함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사. 사카린나트륨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식품첨가물(GB2760-2014)
내용	– 분류 : 12.10 복합조미료 – 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 : 0.15μg/kg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1&guid=0AED8171-9242-419F-8B19-B14DBACFAAFB

중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복합조미료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 0.15μg/kg – 주 용도 : 감미료, 착향료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복합조미식품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
– 사용 기준 : 1.5g/kg 이하 – 주 용도 : 감미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_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유청분말 및 유청단백분말(GB 11674-2010)
내용	– 분류 : 유청분말 및 유청단백분말 – 균락총수 검출 기준 * 미생물 제한량 ① 황색포도상구균 (CFU/g) : n=5, c=2, m=10, M=100 ② 살모넬라균 (CFU/g) : n=5, c=0, m=0/25g, M= (–)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806A934C-35AA-44F6-8BE5-110A11B2B4D7

중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유청분말 및 유청단백분말
균락총수 검출 기준
* 미생물 제한량 ① 황색포도상구균 (CFU/g) : n=5, c=2, m=10, M=100 ② 살모넬라균 (CFU/g) : n=5, c=0, m=0/25g, M= (–)

한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기타식품류(효모식품)
균락총수 검출 기준
대장균 : n=5, c=1, m=0, M=10 세균수 :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_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조류 및 그 조제품(GB19643-2016)
내용	– 분류 : 해조류 – 균락총수 검출 기준 ① 균락총수 (CFU/g) : n=5, c=2, m=3 x 10^4 , M=10^5 => 최대 허용치 : 100,000 CFU/g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99317CC6-B110-4BAA-9B1A-B0A2F3DE26DD

중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해조류
균락총수 검출 기준
100,000CFU/g

한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조미김
균락총수 검출 기준
별도 기준치 없음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위생]_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비스킷(GB 7100-2015)
내용	– 분류 : 과자류 – 균락총수 검출 기준(CFU/g) : n=5, c=2, m=10^4, M=10^5 (*) 검증방법 : GB 4789.2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CBF9072A-62F3-4B36-BF92-89F1DE3D671D

중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과자류(비스킷)
균락총수 검출 기준
– 균락총수 검출 기준(CFU/g) : n=5, c=2, m=104, M=105

한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과자류, 빵류, 떡류
균락총수 검출 기준
– 대장균 : n=5, c=1, m=0, M=10(떡류에 한한다.) –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과자, 캔디류 밀봉 제품에 한하며, 발효 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한다.)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_나. 곰팡이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음료류(GB 7101-2022)
내용	– 분류 : 고체음료 – 곰팡이 검출 기준 곰팡이/(CFU/g 또는 CFU/mL) : 50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459B054F-EAA7-4729-9889-5402BCFFCB3C

중국 곰팡이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고체음료
곰팡이 검출 기준
50 CFU/g(또는 CFU/mL) 이하

한국 곰팡이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기타 음료
곰팡이 검출 기준
– 곰팡이 검출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세균수 : n=5, c=1, m=100, M=1,000 (분말 제품, 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한다.) (2) 대장균군 : n=5, c=1, m=0, M=10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위생]_다. 이물질 발견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동물성 수산가공품(GB 10136-2015)
내용	– 분류 : 동물성 수산가공품(냉동 갈치) – 해당 분류의 품목은 다음의 관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색과 광택: 제품의 적절한 색과 광택이 있음 맛, 냄새: 제품의 정상적인 맛, 냄새가 있고 이상하거나 부패한 맛이 없음 상태: 제품의 정상적인 형상과 조직상태가 있고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 곰팡이, 벌레 좀이 없음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1CD077E8-1130-488F-8E87-3662D30B115F

중국 이물질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동물성 수산가공품
이물질 검출 기준
관능검사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야 함

한국 이물질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이물질 검출 기준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됨 ①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 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제외함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 이물은 2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안됨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위생]_라. 기생충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동물성 수산가공품(GB 10136-2015)
내용	– 분류 : 동물성 수산가공품(냉동 참조기) – 인스턴트 생 동물성 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흡충 피낭유충: 검출되지 않아야 함 선형 기생충 유충: 검출되지 않아야 함 촌충 스파르가눔: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인스턴트 생 동물성 수산품: 신선, 냉장, 냉동, 살아있는 어류, 갑각류, 패류, 두족류 등 동물성 수산품을 원료로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가공하며 염지 또는 익히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품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1CD077E8-1130-488F-8E87-3662D30B115F

중국 기생충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동물성 수산가공품
기생충 검출 기준
흡충 피낭유충, 선형 기생충 유충, 촌충 스파르가눔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한국 기생충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기생충 검출 기준
기생충은 이물질의 범주에 포함됨 –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이물질 검출 기준 적용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④ [서류] _ 가. 인증서류 미비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내용	제 8조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은 등록 추천 기업을 심사하고 검사하여 등록 요건에 충족함을 확인한 후에 해관총서에 등록 추천하며 아래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의 추천서 (2)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3)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영업등록증과 같은 기업 아이덴티티 (identity) 증명 문서 (4)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성명서 (5)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심사 및 검사 보고서 필요한 경우 해관총서는 기업의 공장, 작업장, 냉동 창고의 평면도 및 공정 흐름도와 같은 기업의 식품안전위생 및 방어시스템 관련 문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제 7조 소재국 주무관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해야 하는 품목 :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casing),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관련 제품, 꿀벌 제품, 알류 및 관련 제품, 식용 유지 및 그 원료, 소를 넣은 밀가루 음식, 식용 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신선 및 탈수 야채와 말린 콩,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 말린 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카카오 열매, 특수용도식품, 건강식품 ※ 그 외 품목은 직접 등록을 시행하며, 등록 시 하기 서류가 필요함 (1) 기업 등록 신청서 (2)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 발급한 영업등록증 등과 같은 기업 아이덴티티(identity) 증명 문서 (3)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 충족을 약속하는 성명서
URL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616161.ht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⑤ [기타] _가. 검역검증 승인을 얻지 못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海关总署第249号令)
내용	제 6장 식품의 수출입 제 92조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상품 검사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함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검역허가증명서를 받아야 식품 수입이 가능함
UR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⑤ [기타] _나. 유통기한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海关总署第249号令)
내용	제 28조 해관은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함 현장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 (1) 운송도구, 저장 장소가 안전·위생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2) 컨테이너 번호, 씰 넘버, 내·외포장에 표기된 내용, 화물의 실제상황이 신고한 정보 및 동봉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3) 동식물성 식품, 포장물 및 깐 바닥 재료가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제 22조에서 규정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4) 내·외포장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오염, 파손, 침수, 침투 등이 존재하는지 (5) 내·외포장의 라벨, 표기 및 설명서가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는지 (6) 식품의 관능적 성상이 해당 식품이 갖춰야 하는 성상에 부합하는지 (7) 냉동·냉장식품은 신선함의 정도, 중심 온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 병리 변화가 있는지, 냉동·냉장 환경 온도가 유관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콜드 체인의 온도 컨트롤 시설 작동이 정상인지, 온도 기록이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함. 필요시, 증자시험(蒸煮试验)을 진행할 수 있음
UR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대만

①[성분부적합]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소스류	가. 감미료 사카린 0.08 g/kg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1건
농산물	채소류	나. 소브산 0.12 g/kg,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012 g/kg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1건
수산물	해조류	다. 감미료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1건

②[잔류농약 검출]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실류	가. 플루페녹수론 0.02 ppm, 노발루론 0.03 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나. 산화 에틸렌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농산물	면류			1건
농산물	채소류	다. 피리벤카브 0.02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농산물	과실류	라.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농산물	채소류	마.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성분부적합]_가. 감미료 사카린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내용	– 분류 : 감미료 – 사카린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제 2조 식품첨가물의 이름, 범위, 적용 및 제한은 표 1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어선 안 됨 해당 법령에 의거, 감미료 사카린의 사용 규격에 김치 양념과 관련된 품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미료 사카린은 검출되어선 안 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84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김치 양념	절임류/김치류/소스
사카린(나트륨) 검출 기준	사카린(나트륨) 검출 기준
불검출	– 절임류 : 1.0g/kg 이하 – 김치류 : 0.2g/kg 이하 – 소스 : 0.16g/kg 이하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성분부적합]_나. 소브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내용	– 분류 : 보존료 – 소브산 검출 기준 : 간장 절임 채소에 Sorbic Acid로서 2.0g/kg 이하로 사용 가능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출 기준 : 불검출 – 동일 식품에 여러 보존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 종류의 보존료의 실제 사용량을 해당 사용량 기준으로 나누어서 얻은 수치(즉 실제 사용량/사용량 기준)의 총합은 1보다 클 수 없다.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제 2조 식품첨가물의 이름, 범위, 적용 및 제한은 표 1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어선 안 됨 해당 법령에 의거, 소브산의 검출은 허용되나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사용 규격에 양념 깻잎과 관련된 품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검출되어선 안 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84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간장 절임 채소
소브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출 기준
– 소브산: 2.0g/kg 이하로 사용 가능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출 기준 : 불검출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절임 식품
소브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검출 기준
– 소브산: 1.0g/kg 이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절임식품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 불가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성분부적합]_다. 감미료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내용	– 분류 : 해조류 –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 검출 기준: 1. 본 제품은 실제 필요에 따라 멜론씨, 설탕에 절인 과일, 매실분말에 적당량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제품은 설탕대용정 및 그 분말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특수 영양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수 영양식품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 관할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제품은 두유 및 유제품 음료, 발효유 및 그 제품, 아이스크림, 페이스트리, 츄잉껌, 사탕, 스낵 및 시리얼 아침식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0.05% 미만입니다. 5. 본 제품은 음료, 간장, 소스, 절인 야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복용량은 0.1% 미만입니다.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제 2조 식품첨가물의 이름, 범위, 적용 및 제한은 표 1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어선 안 됨. 해당 법령에 의거, 감미료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의 사용 규격에 해조류와 관련된 품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미료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는 검출되어선 안 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84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해조류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모든 식품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 검출 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됨 1. 설탕, 2. 포도당 3. 물엿, 4. 벌꿀류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②[잔류농약 검출]_가. 잔류농약 플루페녹수론 및 노발루론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플루페녹수론 검출 기준 : 0.02ppm - 노발루론 검출 기준 : 불검출 기준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감귤 내 노발루론은 표 1과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감귤
플루페녹수론 및 노발루론 검출 기준
- 플루페녹수론 검출 기준 : 0.02ppm - 노발루론 검출 기준 :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감귤
플루페녹수론 및 노발루론 검출 기준
- 플루페녹수론 검출 기준 : 1.0mg/kg - 노발루론 검출 기준 : 0.5mg/kg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나. 잔류농약 산화에틸렌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산화 에틸렌(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잔류농약의 사용 규격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출되어선 안 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가공식품	가공식품
산화 에틸렌 검출 기준	산화 에틸렌 검출 기준
불검출	- 에틸렌옥사이드 : 불검출(PLS 일률기준 0.01ppm) - 2-클로로에탄올 : 잠정 기준 설정 30ppm 이하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잔류농약 검출]_다. 잔류농약 피리벤카브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배추 – 피리벤카브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검출되어선 안 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공식품
피리벤카브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공식품
피리벤카브 검출 기준	1.0mg/kg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라. 잔류농약 사이에노피라펜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신선 포도 –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검출 기준(ppm) : 파파야 0.3, 패션프루트 0.1, 망고 0.1, 감귤류 0.5/1.5, 딸기 3.0, 배 2.0, 사과 2.0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포도 내 사이에노피라펜 기준은 표 1과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포도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포도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기준
3.0mg/kg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마. 잔류농약 테트라닐리프롤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멜론 –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검출 기준(ppm) : 잎채소 3.0, 쌀 0.02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멜론 내 테트라닐리프롤 기준은 표 1과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멜론	멜론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기준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기준
불검출	0.07pp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일본

① [위생]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어류	가. 대장균 양성	식품별 규격기준	4건
수산물	연체동물			2건
농산물	과자류			3건
축산물	낙농품			2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나.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의 양성	식품별 규격기준	1건
농산물	소스류			1건
수산물	어류			1건
농산물	소스류	다. 세균수 검출 기준 초과	식품별 규격기준	1건
농산물	과자류			1건
수산물	갑각류			3건
농산물	음료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일본

② [성분부적합]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자류	가. 폴리소르베이트 기준치 초과 검출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1건
농산물	소스류			1건
수산물	연체동물			1건
농산물	과자류	나. 시안화물 기준치 초과 검출	시안화합물을 함유하는 식품의 취급에 대해서	1건
농산물	과실류	다. 파툴린 기준치 초과 검출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1건

③ [잔류농약]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채소류	가. 헥사코나졸 기준치 이상 검출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2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위생]_가. 대장균 양성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食品別の規格基準)
내용	- 분류 : (냉동)어류, (냉동)연체동물, (냉동)과자류, 낙농품 - 대장균 검출 기준치 : 음성이어야 함 ※ 냉동식품은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가열 후 섭취 냉동 식품(냉동 전 가열 여부에 상관없음)을 모두 포함
UR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6M50000100052

일본 대장균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식품
대장균 검출 기준
음성 반응이어야 함

적용 대상
낙농품
대장균 검출 기준
음성 반응이어야 함

한국 대장균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산가공식품류	과자류
대장균 검출 기준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n=5, c=1, m=0, M=10 (떡류에 한함)

적용 대상
유가공품
대장균 검출 기준
n=5, c=2, m=0, M=10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위생]_나.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의 양성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食品別の規格基準)
내용	1) 통관거부 품목 : 레토르트 식품, 소스류 2) 규정 대상 품목 : 용기 포장 충전 가압 가열 살균 식품(容器包装詰加圧加熱殺菌食品) 3) 가압 가열 살균 식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주 원재료가 해당 식품에 존재하면서,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효력을 갖는 방법일 것 - PH가 4.6을 초과하고, 수분 활성이 0.94를 초과하는 가압 가열 살균 포장 식품의 경우, 중심부의 온도를 120°에서 1분 동안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능을 갖는 방법일 것 4) 미생물 검출 기준 : 음성이어야 함
URL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094504.pdf

일본 미생물에 관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용기 포장 충전 가압 가열 살균 식품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에 관한 기준

- PH가 4.6을 초과하고, 수분 활성이 0.94를 초과하는 가압 가열 살균 포장 식품의 경우, 중심부의 온도를 120°에서 1분 동안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능을 갖는 방법일 것
- 미생물 검출 기준 : 음성이어야 함

한국 미생물에 관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즉석식품류
미생물에 관한 기준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1g 당 100 이하
- 바실루스 세레우스 : 1g 당 1,000 이하
- 대장균: n=5, c=2, m=0, M=10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위생]_나.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의 양성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食品別の規格基準)
내용	1) 통관거부 품목 : 어류 2) 규정 대상 품목 : 생식용 생선 어패류(生食用鮮魚介類) 3) 미생물 검출 기준 :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가 검체 1g당 100 이하여야 함
URL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26765.pdf

일본 미생물에 관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어류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미생물 검출 기준 :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가 검체 1g당 100 이하여야 함

한국 미생물에 관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어류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세균수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n=5, c=2, m=100,000, M=500,000 나) 대장균 ①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동물성 냉동수산물 : n=5, c=2, m=0, M=10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또는 냉동식용어류내장 : n=5, c=2, m=0, M=10 ③ 생식용 굴 : n=5, c=1, m=230, M=700 MPN/100g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위생]_다. 세균수 검출기준 이상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食品別の規格基準)
내용	1) 분류 : 냉동식품(무가열 섭취) - 세균수 검출 기준 : 1g 당 100,000 이하 2) 분류 : 분말 청량 음료 - 세균수 검출 기준 : 1g당 3,000 이하
UR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일본 세균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식품(무가열 섭취)
세균수 검출 기준
1g 당 100,000 이하

적용 대상
분말 청량 음료
세균수 검출 기준
1g 당 3,000 이하

한국 세균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 검출 기준
n=5, c=2, m=100,000, M=500,000 (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적용 대상
탄산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세균수 검출 기준
1) 탄산음료 - 세균수 : n=5, c=1, m=100, M=1,000 2) 기타음료 - 세균수 : n=5, c=1, m=100, M=1,000 (분말제품,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n: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가. 폴리소르베이트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
내용	1) 분류 : 과자류(기타식품) - 폴리소르베이트80 사용기준 : 0.02g/kg 2) 분류 : 소스류 - 폴리소르베이트65 사용기준 : 5.0g/kg 3) 분류 : 연체동물(기타식품) - 폴리소르베이트 20/60/65/80 사용기준 : 0.02g/kg (*) 일본의 폴리소르베이트 사용 기준 중 과자류에 관한 기준은 분말믹스, 과자 제조용 장식, 생양과자 등에 대해 폴리소르베이트80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나 통관거부된 품목인 프레첼에 대한 기준은 따로 규정된 바 없어 기타식품으로 분류하여 그 기준을 확인함. 또한, 소스류에 관한 기준은 폴리소르베이트65에 대해 5.0g/kg의 최대 사용 기준이 적용됨
URL	http://db.ffcr.or.jp/front/

일본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기타식품(프레첼, 연체동물)
폴리소르베이트 검출 기준
(폴리소르베이트80 기준) 0.020g/kg
적용 대상
소스류
폴리소르베이트 검출 기준
(폴리소르베이트65 기준) 5.0g/kg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 전체
폴리소르베이트 검출 기준
- 사용기준 : 일반 사용 기준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함) - 주용도 : 유화제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나. 시안화물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시안화합물을 함유하는 식품의 취급에 대해서 (シアン を する のいについて化合物 含有 食品 取扱)
내용	- 분류 : 카사바 칩 - 시안화물 검출 기준치 : 10ppm ※「시안 화합물을 함유하는 식품의 취급에 대해서」 1. 천연 시안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및 그 가공품 검사 명령 대상 식품 제외에 관해 수입 시마다 화물을 보류한 후 시안 화합물에 관한 빈도 검사를 지도함 또한, 10ppm을 초과하여 시안 화합물이 검출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 6조 위반으로 조치함 〈주요 식품〉 아마의 열매, 살구의 씨, 매화의 씨, 비터 아몬드, 카사바 잎, 비와 씨앗
URL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83546.pdf

일본 시안화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카사바 성분
시안화물 검출 기준
10ppm

한국 시안화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카사바
시안화물 검출 기준
(*) 섭취 기준만 규정되어있음 1회 4g, 하루 16g을 초과하여 섭취하지 말 것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다. 파툴린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食品別の規格基準)
내용	– 분류 : 사과주스 – 파툴린 검출 기준치 : 사과의 착즙 및 착즙된 과즙만을 원료로 하는 것의 경우 파툴린의 함유량이 0.050ppm을 초과해선 안됨
UR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일본 파툴린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사과주스
파툴린 검출 기준
0.050ppm

한국 파툴린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사과주스 농축액
파툴린 검출 기준
50㎍/㎏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잔류농약]_가. 잔류농약 헥사코나졸 기준치 이상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
내용	1) 분류 : 양파 –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치 : 일률기준 0.01ppm 2) 분류 : 고추 –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치 : 일률기준 0.01ppm
URL	http://db.ffcr.or.jp/front/

일본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양파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일률기준 0.01ppm
적용 대상
고추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일률기준 0.01ppm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양파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0.05mg/kg
적용 대상
고추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0.5mg/kg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EU

①[성분부적합]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가.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및 E171(이산화티타늄) 사용	(EC) 1333/2008 (EU) 2022/63	1건
농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나. 실데나필 검출	(EC) No 1333/2008 (EC) 2002/46	1건
수산물	해조류	다. 요오드 성분 과다 검출	(EU) 2018/464	1건

②[서류]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면류	가. 서류 불일치	(EU) 2016/341	2건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성분부적합] _가. 승인되지 않은 성분 사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EC) No 1333/2008, (EU) 2022/63
내용	–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 사용 불가 – 이산화티타늄 : 사용 불가 (*)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EC) No 1333/2008에 따라, 부속서 2,3의 목록에 포함된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음.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의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 E171(이산화티타늄)은 2022년 1월 1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Regulation (EU) 2022/63에 따라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이산화티타늄은 유전 독성, 즉 화학물질이 유전 세포 물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됨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8R1333-20230322&qid=168412836244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2R0063

EU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보충제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및 이산화티타늄 사용기준
(1)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 사용불가 (2) 이산화티타늄 : 사용불가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보충제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및 이산화티타늄 사용기준
(1)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2) 이산화티타늄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 제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성분부적합]_나. 실데나필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EC) No 1333/2008, (EU) 2022/63
내용	- 실데나필 : 사용 불가 (*)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EC) No 1333/2008에 따라, 부속서 2,3의 목록에 포함된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음. 실데나필의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 (EC) 2002/46에 따르면, 식품보충제 제조 시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사용이 가능함. 비타민과 미네랄 이외의 성분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잠재적인 건강 위험으로부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물질 목록을 유지 관리하여 사용을 통제하고 있음. 다만,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른 특정 법률(새로운 식품, 식품강화제 등)에 따라 허가될 수도 있음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8R1333-20230322&qid=168412836244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2L0046&qid=1691555030703

EU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식품보충제	식품보충제
실데나필 사용기준	실데나필 사용기준
사용불가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 실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성분부적합] _ 다. 요오드 성분 과다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EU) 2018/464 (참조)
내용	- 분류 : 해조류 - (EU) 요오드 검출 기준 : 별도 검출 기준 없음 (*) 요오드 강제 규정은 없지만 (EU) 2018/464 권고안에 따라 통관거부 조치 가능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H0464&qid=1691582142015

EU 요오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해조류
요오드 사용기준(권고사항)
별도 검출 기준 없음 (*) 권고사항 - 첨가 기준 : 20mg/kg - 권장 섭취량 : 150㎍/일 - 상한 섭취량 : 600mg/kg

한국 요오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해조류
요오드 사용기준(권고사항)
별도 검출 기준 없음 (*) 권고사항 - 첨가 기준 : 규정 없음 - 권장 섭취량 : 150㎍/일 - 상한 섭취량 : 2,400mg/kg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②[서류]_가. 서류 불일치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EU) 2016/341
내용	(EU) 2016/341에 따라, EU는 수입신고 및 통관 시 다음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제출된 모든 정보와 서류는 실제 수출 품목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 -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한 정보(이름 및 주소) - 발행일 - 송장 번호 - 상품 설명(이름, 품질 등) - 측정 단위 - 상품 수량 - 단위 값 - 총 항목 값 - 총 송장 금액 및 결제 통화 - 결제조건(결제방법 및 결제일자, 할인 등) - 적절한 Incoterm에 따른 인도 조건 - 운송수단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6R0341

EU 수입통관 서류 관련 조항

수입통관 필요 정보 및 서류

-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한 정보(이름 및 주소)
- 발행일
- 송장 번호
- 상품 설명(이름, 품질 등)
- 측정 단위
- 상품 수량
- 단위 값
- 총 항목 값
- 총 송장 금액 및 결제 통화
- 결제조건(결제방법 및 결제일자, 할인 등)
- 적절한 Incoterm에 따른 인도 조건
- 운송수단

한국 수입통관 서류 관련 조항

수입통관 필요 정보 및 서류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표시 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 물품의 장치 장소
- 기타 참고사항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호주

①[성분부적합]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어류	가. 히스타민 성분 기준치 초과(730mg/kg) 검출	HIS 12/2016	1건
수산물	해조류	나. 요오드 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	BSW 12/2021 HJS 10/2016	2건

②[기타]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연체동물	가. 수입 금지 식품	MOL 05/2014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성분부적합]_가. 히스타민 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HIS 12/2016
내용	– 분류 : 꽁치(학명: Scomberesocidae) – 히스타민에 민감한 물고기의 히스타민 허용량 : 최대 200mg/kg (*) 꽁치는 히스타민에 민감한 물고기에 포함되며, 이 경우 수입 식품 검사 제도의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함
URL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histamine-susceptible-fish

호주 히스타민 성분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꽁치, 참치, 고등어, 가다랑어, 청어, 멸치 등 열기어과 어류
히스타민 검출 기준
최대 200mg/kg

한국 히스타민 성분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건조 또는 절단 등 단순 처리한 것 (어육, 필렛, 건멸치 등)
히스타민 검출 기준
200mg/kg 이하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성분부적합]_나. 요오드 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BSW 12/2021, HJS 10/2016
내용	- 분류 : 미역, 다시마 - 갈조류 요오드 허용량 : 최대 1,000mg/kg(건조 중량 기준) (*) 미역, 다시마는 갈조류(Brown Seaweed)에 포함되며, 이 경우 수입 식품 검사 제도의 관련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함
URL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rown-seaweed

호주 요오드 성분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모든 갈조류
요오드 검출 기준
최대 1,000mg/kg(건조 중량 기준)

한국 요오드 성분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건조 또는 절단 등 단순 처리한 것 (어육, 필렛, 건멸치 등)
요오드 검출 기준
요오드 검출 기준 및 규격 없음

3. 3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기타]_가. 수입 금지 식품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MOL 05/2014
내용	- 분류 : 굴 - 수입 조건 : 수입 불가 (*) 한국산 굴은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조건」에 따라 호주로 수입이 제한됨
URL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

호주 수입 허용 품목 규정 조항	한국 수입 허용 품목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굴	굴
굴의 수입 조건	굴의 수입 조건
수일 불가 품목	식용으로 허용된 품목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4. 3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

미국

전년 대비 17% 감소 ▼

('22) 총 5,584건 (문제사유 10,517건) → ('23) 총 4,653건 (문제사유 8,82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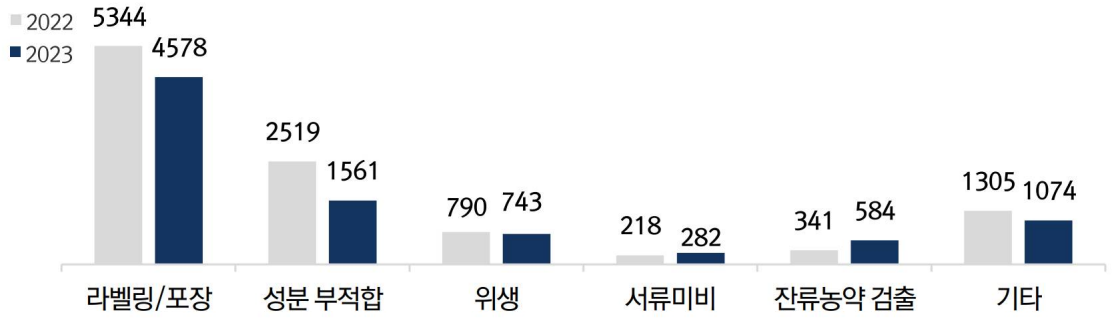

EU

전년 대비 2% 증가 ▲

('22) 총 2,105건 (문제사유 2,108건) → ('23) 총 2,141건 (문제사유 2,15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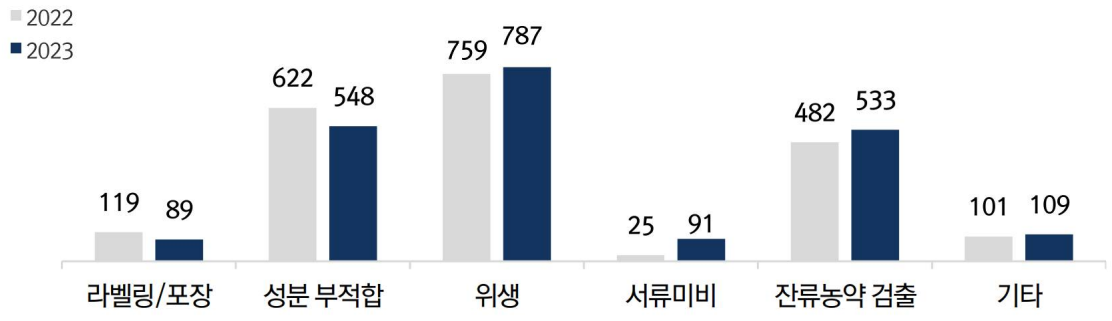

중국

전년 대비 36% 감소 ▼

('22) 총 2,197건(문제사유 2,219건) → ('23) 총 1,416건

※중국의 경우 9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공시되어 2023년 1월~8월 문제사례의 합산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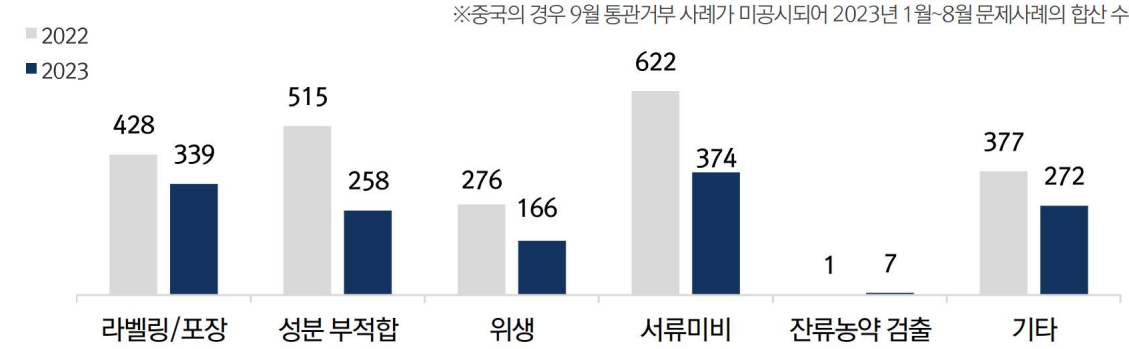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글로벌 통관거부사례는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를 포함함

※ 미국, EU, 일본, 대만의 경우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가 발생하여, 문제사유 건수 별도 집계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4. 3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

일본

전년 대비 1% 감소 ▼

('22) 총 535건 (문제사유 536건) → ('23) 총 527건 (문제사유 53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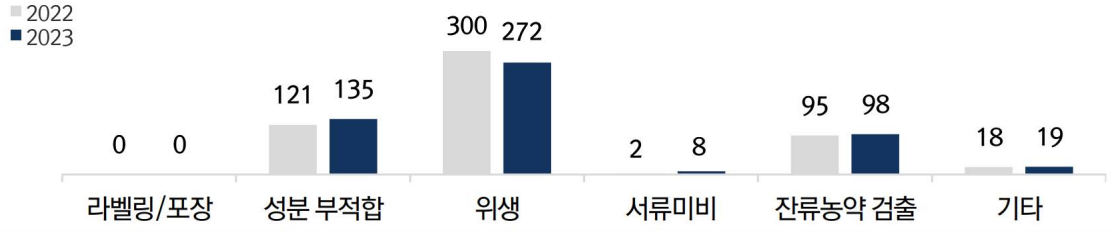

대만

전년 대비 0.7% 감소 ▼

('22) 총 439건 → ('23) 총 436건 (문제사유 43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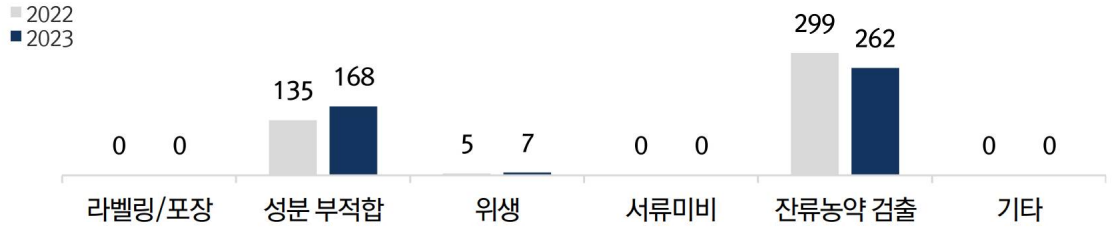

호주

전년 대비 26% 증가 ▲

('22) 총 140건 (문제사유 141건) → ('23) 총 176건

※호주는 2023년 8월 및 9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3분기 통계 수치는 1월~7월 수치만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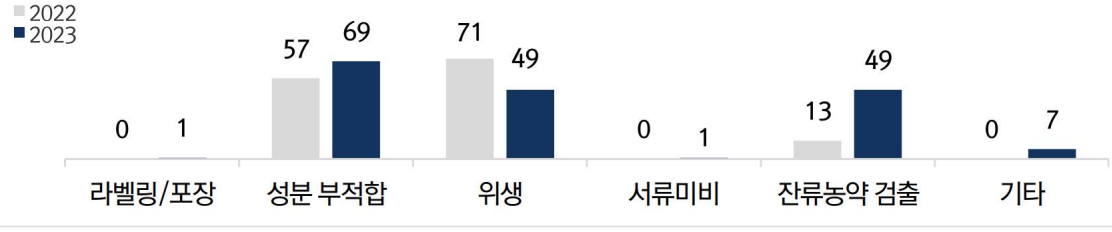

러시아

전년 대비 84% 감소 ▼

('22) 총 87건 → ('23) 총 14건

※러시아는 2023년 7~9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3분기 누적 통계 수치는 2분기 수치까지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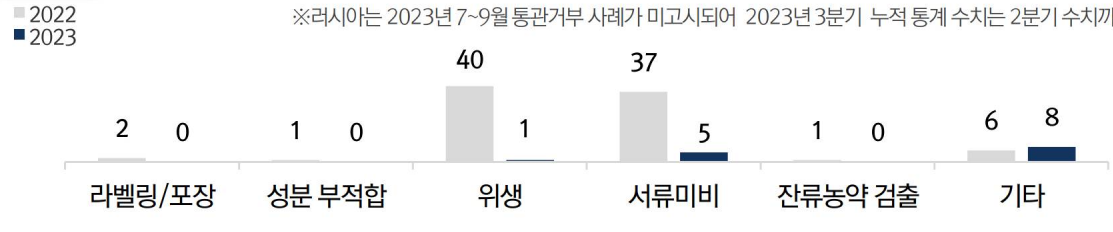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글로벌 통관거부사례는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를 포함함

※ 미국, EU, 일본, 대만의 경우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가 발생하여, 문제사유 건수 별도 집계함

Ⅱ. 국가별 리콜사례

1. '23년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동향

한국산 리콜사례 국가별 현황 : ('22년 3분기) 총 148건 → ('23년 3분기) 총 109건

EU ▼

한국산 2건
'23년 3분기 누계 2건
'22년 3분기 누계 4건 / 연 누계 4건

라벨링/포장	1
성분 부적합	1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필리핀 ▼

한국산 65건
'23년 3분기 누계 65건
'22년 3분기 누계 87건 / 연 누계 99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65

일본 ▼

한국산 14건
'23년 3분기 누계 14건
'22년 3분기 누계 53건 / 연 누계 54건

라벨링/포장	5
성분 부적합	5
위생	3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

캐나다 ▼

한국산 2건
'23년 3분기 누계 2건
'22년 3분기 누계 2건 / 연 누계 2건

라벨링/포장	2
성분 부적합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호주 ▼

한국산 19건
'23년 3분기 누계 19건
'22년 3분기 누계 0건 / 연 누계 0건

라벨링/포장	14
성분 부적합	0
위생	5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홍콩 ▼

한국산 1건
'23년 3분기 누계 1건
'22년 3분기 누계 0건 / 연 누계 0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0
위생	1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뉴질랜드 ▼

한국산 6건
'23년 3분기 누계 6건
'22년 3분기 누계 0건 / 연 누계 0건

라벨링/포장	6
성분 부적합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한국산 리콜사례 품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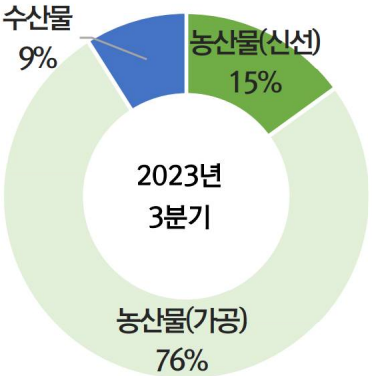

과자류 / 총 37건
호주 14건, 필리핀 12건
뉴질랜드 6건, 일본 4건, 캐나다 1건

음료 / 총 9건
필리핀 7건, 일본 2건

커피류 / 총 12건
필리핀 12건

기타조제 농산품 / 총 7건
필리핀 4건, 일본 3건

면류 / 총 8건
필리핀 4건, 일본 4건

소스류 / 총 6건
필리핀 6건

※ 2022년 3분기(1월~9월) 한국산 리콜사례의 총 건수에는 미국 2건이 포함됨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당해 연간 한국산 주요 리콜사례의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

한국산 **14**건(문제사유 15건)

한국산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4	52	14
농산물	4	51	14
수산물	0	1	0

- **'23년 3분기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1] 사례는 총 1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한국산 제품은 과자류와 면류가 각 4건, 기타조제 농산품이 3건, 음료 2건, 낙농품과 채소류가 각 1건이며, 주요 문제 사유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일본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제품 라벨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리콜 조치됨**
-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품 라벨 표기 정보를 준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된 식품의 라벨 정보는 일본어로 표기해야 함**

◦ 일본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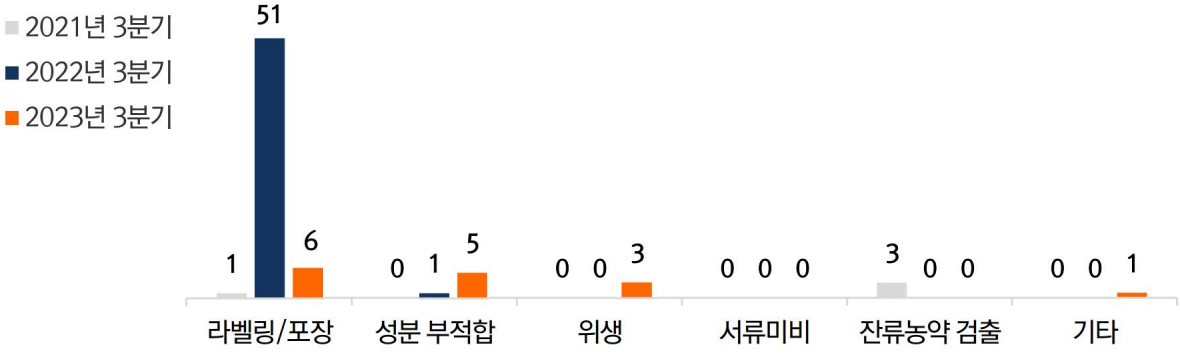

◦ 일본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라벨링 / 한국어 표기로 판매(일부 일본어 표기 라벨을 붙이지 않은 채 점포 판매)
-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 보건복지부령 제23호)

관련 수입국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 보건복지부령 제2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48년 보건복지부령 제23호)	제2장 라벨링 제21조 (1) 별표 3에 따른 판매용 식품 또는 첨가물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i) (라벨 표시 항목 나열) (ii) 전항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사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알기 쉽게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URL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3991/en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사례를 의미함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필리핀

한국산 65건

한국산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28	87	65
농산물	26	75	58
수산물	2	12	7

- **'23년 3분기까지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6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23년 3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과자류와 커피류가 각 12건, 음료 7건, 소스류 6건, 과실류, 기타조제 농산품, 면류가 각 4건, 해조류, 어류가 각 3건, 기타 육류, 채소류, 포유 가축 육류가 각 2건, 연체동물과 코코아류, 당류가 각 1건이며, 모두 기관의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여 리콜 조치됨**
- 필리핀의 식품의약청법에 따르면, **FDA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 제품(식품)은 제조, 수입, 수출, 판매, 판매 공급 및 유통, 이전, 비소비자의 사용, 홍보, 광고 또는 후원이 금지되어 있음**

◦ 필리핀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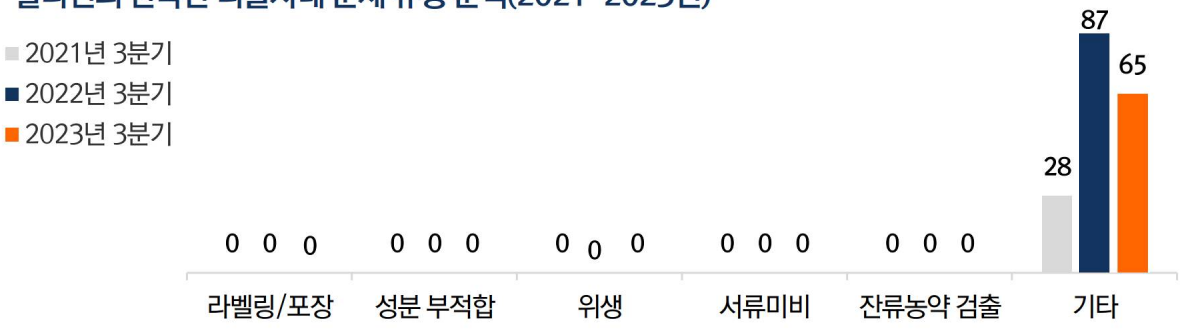

◦ 필리핀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기타/ 등록되지 않은 상품
- 관련 규정 : 식품의약청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관련 수입국 규정	식품의약청법
식품의약청법	제 11조. 다음과 같은 행위와 그 원인은 해당 규정에 의해 금지된다. (j) 이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지만, FDA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판매 공급, 유통, 이전, 비소비자의 사용, 홍보, 광고 또는 후원
URL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09/08/18/republic-act-no-9711/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호주

한국산 19건

한국산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4	0	19
농산물	4	0	19
수산물	0	0	0

- '23년 3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함
- '23년 3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과자류 14건과 버섯류 5건임. 주요 문제 유형은 라벨링 문제로 과자류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위생 문제는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건으로 확인됨
- 호주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에 따라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을 포함하여 10개의 지정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호주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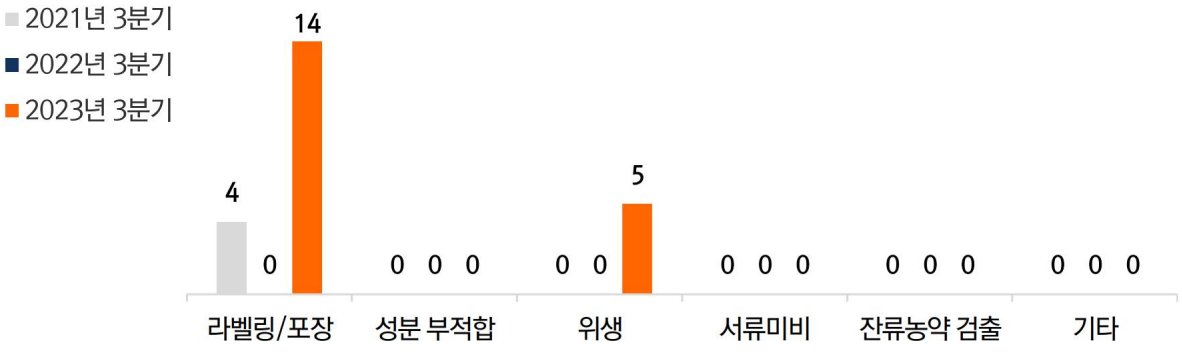

◦ 호주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라벨링/ 필수 알레르겐 표기정보 미표기
- 관련 규정 : FSC Standard 1.2.3

관련 수입국 규정	FSC Standard 1.2.3
식품기준법	표준 1.2.3 요청 정보 – 경고 문구, 충고 문구 및 신고 다음의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식품 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필요 (b) 다음 식품 중 하나 또는 그 식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독일 밀과 해당 곡물의 변종), 갑각류, 계란, 생선, 우유, 땅콩, 콩, 참깨, 견과류(코코넛 제외) , 루핀
URL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C00418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뉴질랜드

한국산 6건

한국산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0	0	6
농산물	0	0	6
수산물	0	0	0

- '23년 3분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23년 3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과자류 6건이며, 모두 알레르겐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라벨링/포장 문제로 리콜됨
- 뉴질랜드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에 따라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을 포함하여 10개의 지정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뉴질랜드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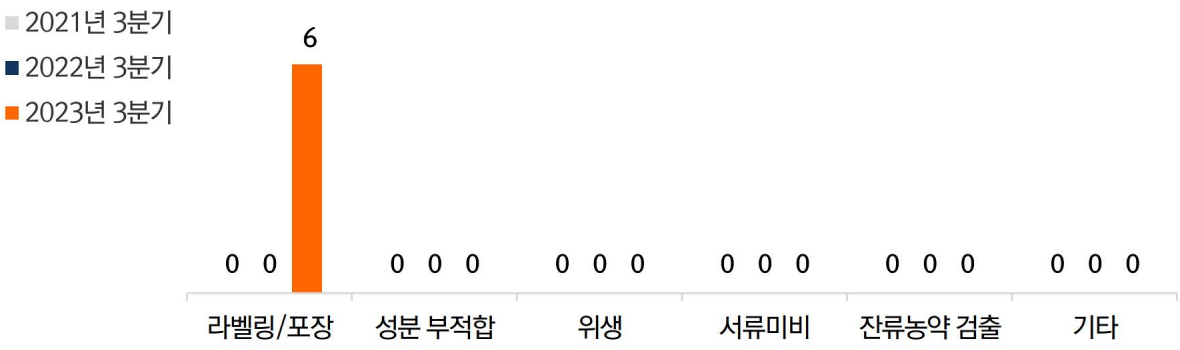

◦ 뉴질랜드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라벨링/ 필수 알레르겐 표기정보 미표기
- 관련 규정 : FSC Standard 1.2.3

관련 수입국 규정	FSC Standard 1.2.3
식품기준법	표준 1.2.3 요청 정보 – 경고 문구, 충고 문구 및 신고 다음의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식품 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필요 (b) 다음 식품 중 하나 또는 그 식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독일 밀과 해당 곡물의 변종), 갑각류, 계란, 생선, 우유, 땅콩, 콩, 참깨, 견과류(코코넛 제외) , 루핀
URL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C00418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EU

한국산 2건 (문제사유 3건)

한국산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2	4	2
농산물	2	3	0
수산물	0	1	2

- '23년 2분기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 사례는 총 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리콜된 한국산 제품은 해조류 2건으로 건조 김, 말린 해조류 제품이며, 기준치 이상의 요오드 성분이 검출되거나 라벨링에 결함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 EU로 수출하는 식품은 기본적으로 (EU) No 1169/2011에 명시된 식품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독일로 해조류 제품을 수출할 경우 독일에서 규정하는 요오드 함량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U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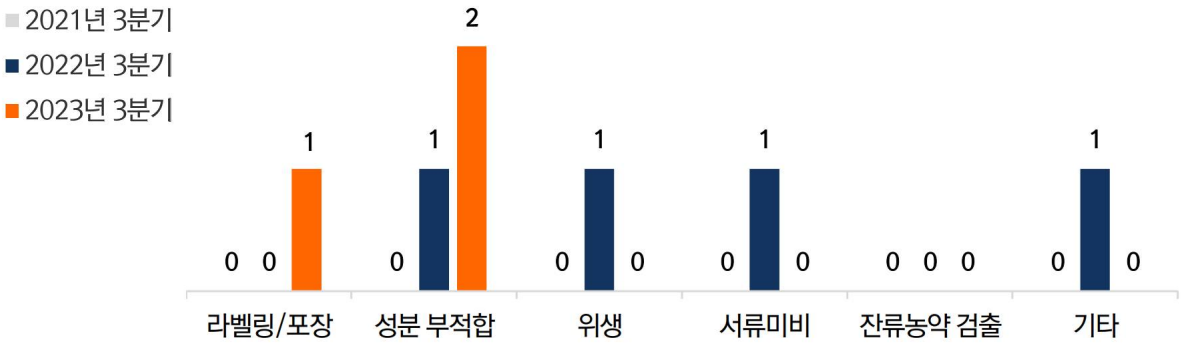

◦ EU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성분 부적합/과도한 요오드 함량 확인
- 관련 규정 : BfR 의견 번호 026/2007

관련 수입국 규정	BfR 의견 번호 026/2007
BfR 의견 번호 026/2007	- 분류 : 해조류 - (독일) 요오드 검출 기준 : 20mg/kg(건조 중량 기준) - (EU) 요오드 검출 기준 : 별도 검출 기준 없음 (*) 리콜 문제가 발생한 국가는 독일로, 독일 정부는 연방위해평가원(BfR)이 요오드 함량이 20mg/kg을 초과하는 해조류 제품을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평가한다는 권고사항을 안전관리 기준으로 적용함
URL	https://www.bfr.bund.de/cm/349/health_risks_linked_to_high_iodine_levels_in_dried_algae.pdf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캐나다

한국산 2건

한국산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8	2	2
농산물	8	2	1
수산물	0	0	1

- '23년 3분기 캐나다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 사례는 총 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동일함
- 리콜된 한국산 제품은 과자류와 어류 각 1건으로, 어묵 제품과 샌드위치 과자 제품에서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달걀)이 검출되는 라벨링 결함 문제가 확인됨
- 캐나다로 수출하는 식품은 식품 알레르기 항원, 글루텐 함유 원료, 아황산염 첨가 유무를 성분 목록에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또는 글루텐의 출처를 성분 바로 뒤에 표시하거나 성분 바로 뒤에 괄호 처리하여 표시되어야 함

◦ 캐나다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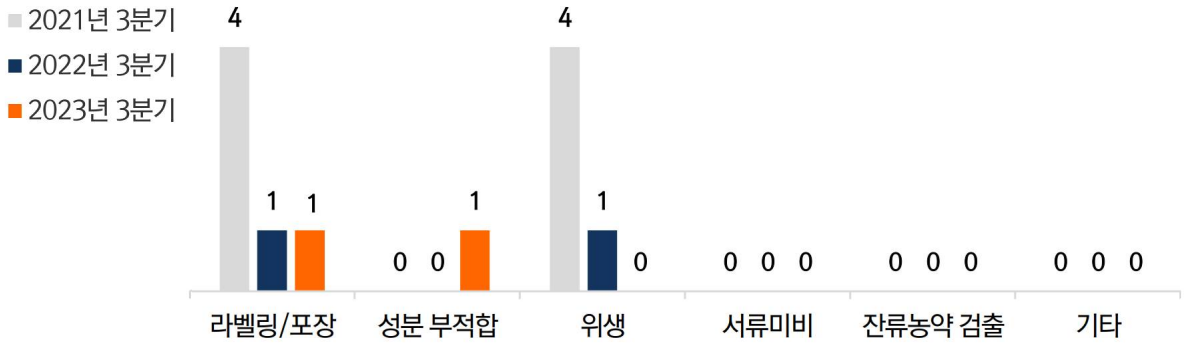

◦ 캐나다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라벨링/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달걀) 검출
- 관련 규정 : 식품의약법

관련 수입국 규정	식품의약법
식품의약법	식품의약법 B.01.010.1(1) _식품 알레르겐 표시 - 식품 알레르겐 정의: 해당 식품의 단백질 또는 파생된 단백질 분획을 포함한 모든 변형 단백질을 의미함 - 표기 필수 식품 원료: 아몬드, 브라질너트, 캐슈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넛, 피칸, 잣, 피스타치오 또는 호두, 땅콩, 참깨, 밀 또는 삼백초, 달걀, 우유, 대두, 갑각류, 연체동물, 물고기, 겨자씨 - 사전 포장된 상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또는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URL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 c. 870/page-5.html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3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홍콩

한국산 1건

한국산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0	0	1
농산물	0	0	1
수산물	0	0	0

- '23년 3분기 홍콩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 사례는 총 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함
- 리콜된 한국산 제품은 식사 대체 귀리 쉐이크 제품으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위생 문제 사례로 리콜 조치됨
- 홍콩의 식품 미생물 함량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일반 즉석섭취식품은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0157형 대장균, 비브리오콜레라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검출되어서는 안됨

◦ 홍콩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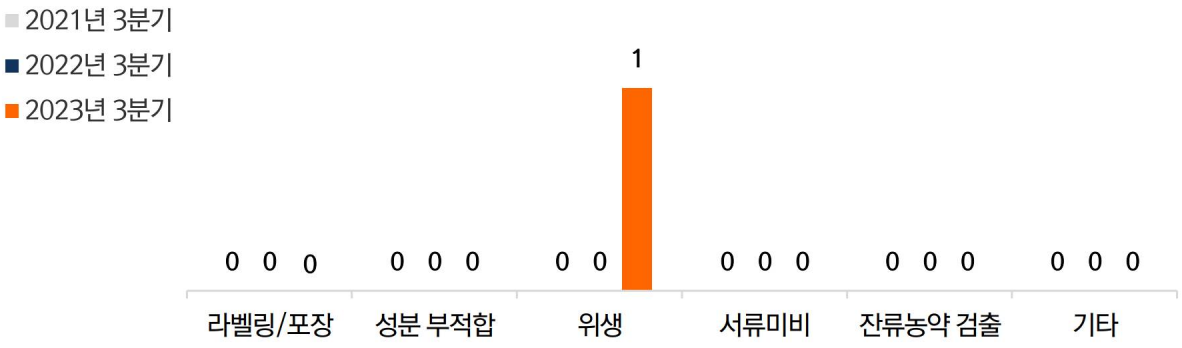

◦ 홍콩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위생(미생물)/살모넬라균 검출
- 관련 규정 : 식품 미생물 함량 지침

관련 수입국 규정	식품 미생물 함량 지침
식품 미생물 함량 지침	제 2장. 일반 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 함량 지침 중 지정 병원성 세균 - 대상 식품: 즉석섭취식품 - 병원성 세균: 살모넬라균 - 시료 25g의 샘플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www.cfs.gov.hk/tc_chi/food_leg/files/food_leg_Microbiological_Guidelines_for_Food_c.pdf

3. 3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일본

전체 리콜사례 총 **364**건(문제사유 총 370건) / 한국산 14건(문제사유 총 15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289	341	364

2023년 3분기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364건으로 현지산 307건, 수입산 57건이며 한국산은 총 14건으로 확인됨. 이 중 6건의 리콜 사례는 2개 이상의 문제사유가 확인되어, 중복 문제사유를 포함한 문제 유형은 총 370건임. **전체 리콜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알레르기 성분,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기 정보 누락, 일본어로 표시된 라벨 미부착 또는 제품 포장 파손 등이 확인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대장균, 곰팡이 등 미생물 또는 자갈, 금속 파편 등 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75건, 기타조제 농산품 57건, 어류 32건 순으로 확인됨

◦ 일본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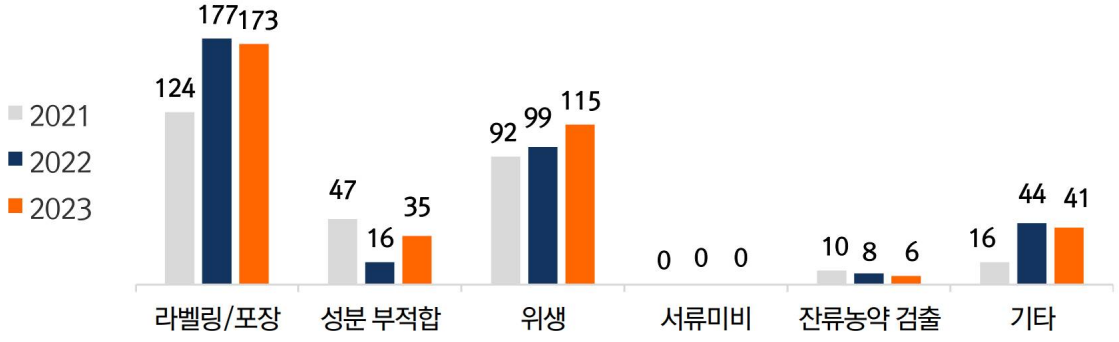

필리핀

전체 리콜사례 총 **1,422**건 / 한국산 65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2,539	797	1,422

2023년 3분기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422건으로 현지산 1,249건, 수입산 173건이며 한국산은 총 65건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사유는 기타 문제로 기관의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여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기타조제 농산품 292건, 과자류 286건, 과실류 121건 순으로 확인됨

◦ 필리핀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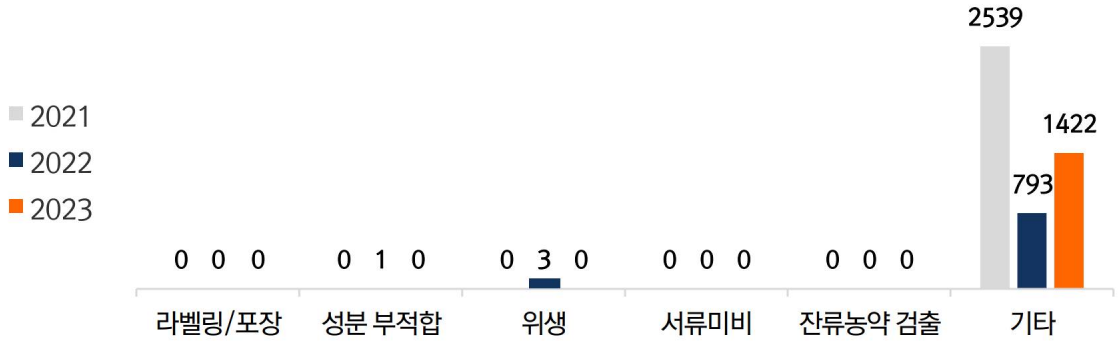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3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호주

전체 리콜사례 총 **94**건 / 한국산 19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98	88	94

2023년 3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94건으로 현지산 40건, 수입산 54건이며 한국산은 19건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 사유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필수 알레르겐 정보 및 제품의 저장방법 미표기,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 검출 또는 포장 불량이 확인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의 미생물 또는 금속,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26건, 코코아류 10건, 낙농품 9건 순으로 조사됨

◦ **호주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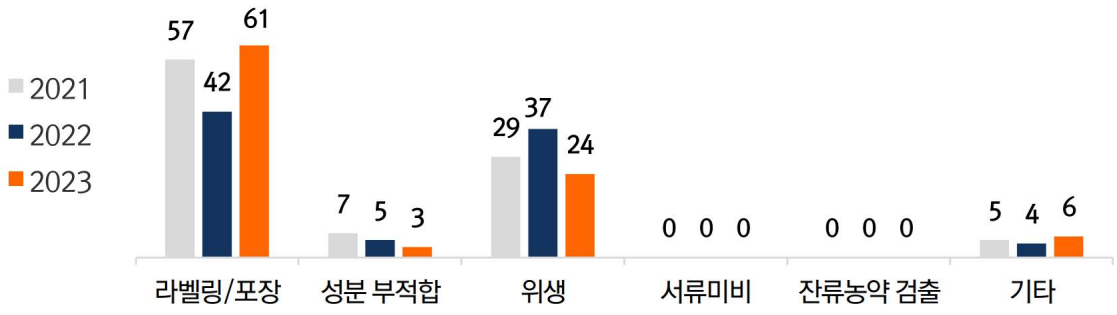

뉴질랜드

전체 리콜사례 총 **111**건 / 한국산 6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119	72	111

2023년 3분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11건으로 현지산 84건, 수입산 27건이며 한국산은 총 6건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살모넬라균, A형 감염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또는 플라스틱, 금속, 돌 등의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기하거나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소스류 51건, 과자류 22건, 과실류 5건 순으로 조사됨

◦ **뉴질랜드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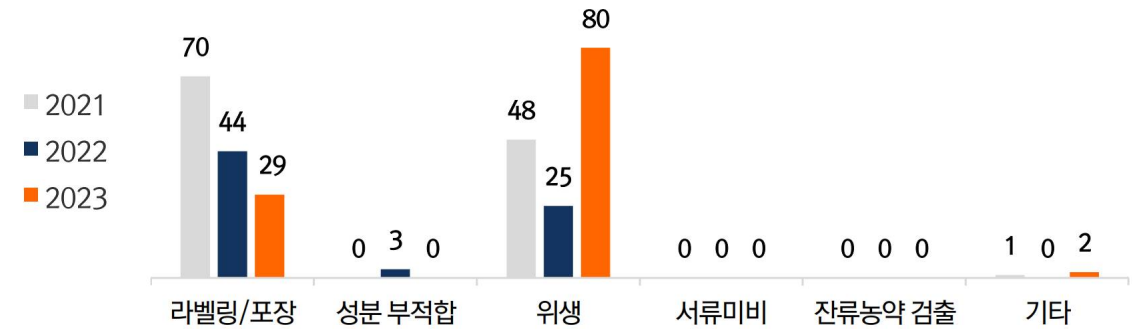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3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EU

전체 리콜사례 총 **841** 건(문제사유 852건) / 한국산 2건(문제사유 3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699	716	841

2023년 3분기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841건으로 현지산 282건, 수입산 559건이며 한국산은 2건으로 확인됨. 중복 문제를 포함한 문제사유 건수는 총 852건임. **전체 리콜 발생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아플라톡신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과 금속 입자, 플라스틱 등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2위는 성분 부적합 문제로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시안화수소산 등의 식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식품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기타조제 농산품 106건, 가금육류 83건, 과자류 78건 순으로 나타남

◦ EU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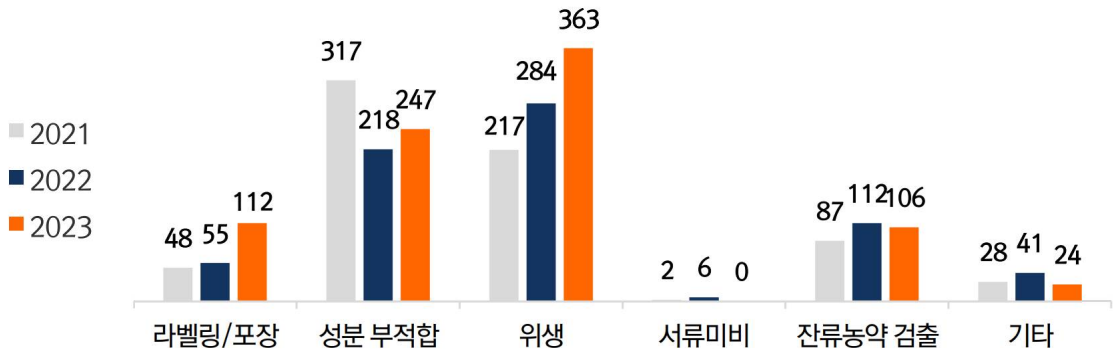

캐나다

전체 리콜사례 총 **327** 건 / 한국산 2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418	487	327

2023년 3분기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327건으로 현지산 19건, 수입산 308건이며, 한국산은 2건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주로 알레르기 유발 항원(우유, 계란 등)을 미표기하거나 포장 용기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리콜 조치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노로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플라스틱, 금속 조각 등 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음료 78건, 낙농품 57건, 코코아류 31건 순으로 확인됨

◦ 캐나다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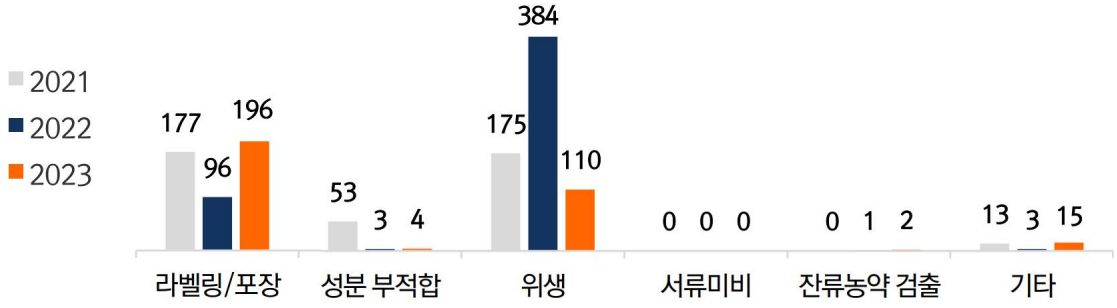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3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홍콩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35	53	26

전체 리콜사례 총 **26**건 / 한국산 1건

2023년 3분기 홍콩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6건으로 모두 수입산 제품이며 한국산은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는 위생과 라벨링/포장 문제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위생 문제는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의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되었으며, 라벨링/포장 문제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 포장에 유리 파손 위험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리콜 조치됨.** 제품 유형은 낙농품 4건, 과실류, 소스류, 음류류가 각 3건, 기타육류와 주류가 각 2건으로 확인됨

◦ 홍콩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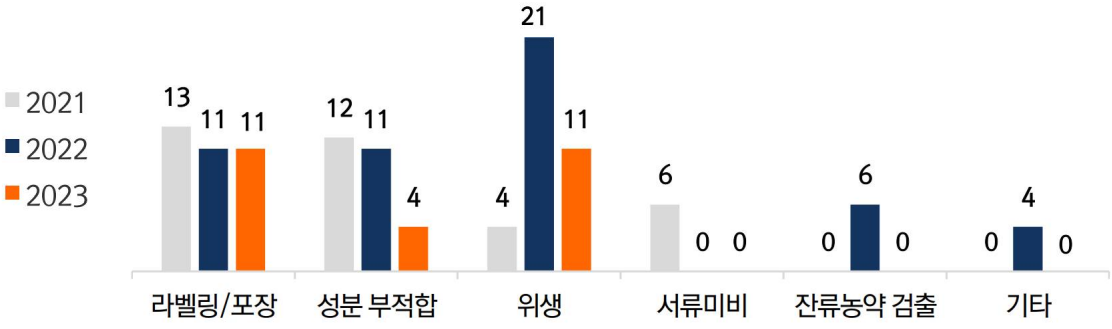

미국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723	716	639

전체 리콜사례 총 **639**건/ 한국산 0건

2023년 3분기 미국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639건으로 현지산 619건, 수입산 20건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사카자기균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과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필수 알레르겐을 미표기하거나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200건, 기타조제 농산품 155건, 채소류 100건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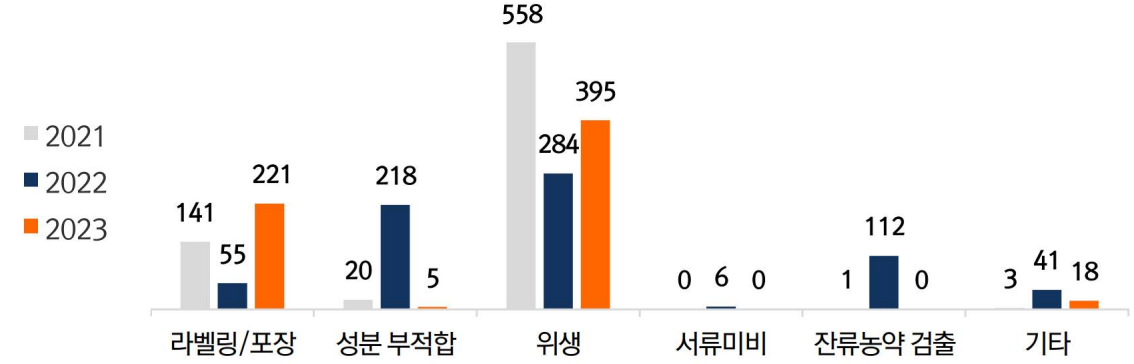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3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싱가포르

전체 리콜사례 총 **36**건(문제사유 37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16	34	36

2023년 3분기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36건으로 현지산 8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입산 제품이며 그 중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 중 1건의 리콜 사례는 2개 이상의 문제사유가 확인되어, 중복 문제사유를 포함한 문제 유형은 총 37건임.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필수 알레르겐을 미표기하거나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달걀, 글루텐 등)이 검출되어 리콜 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또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기타조제 농산품 13건, 과자류 5건, 낙농품 4건 순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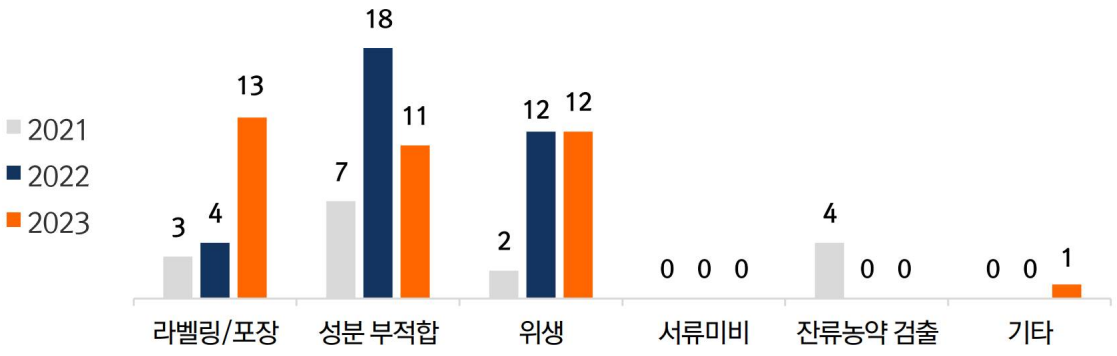

이스라엘

전체 리콜사례 총 **126**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3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341	96	126

2023년 3분기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수입산 7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지산 제품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이 검출되거나 라벨링 오류, 포장 용기 불량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아플라톡신 등의 미생물 또는 금속 조각 등의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위생 상태에서 제품이 생산된 것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26건 , 코코아류 26건, 기타조제 농산품 20건 순으로 확인됨

◦ 이스라엘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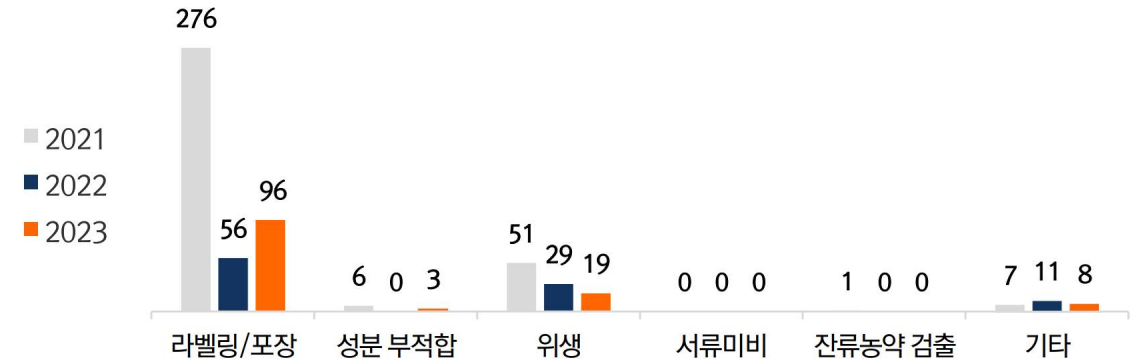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3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2023년 3분기 글로벌 모니터링 이슈 키워드 분석 결과

- 2023.06.01 – 2023.08.31 기준, 총 5,277개 글로벌 식품 이슈 수집
- 키워드 빈도분석 시행, 전체 키워드 중 한국의 주요 수출 식품의 빈도수 확인 및 관련 주요 이슈 추출
- 주요 이슈는 최빈출 식품 키워드 10개 중 한국 수출기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글로벌 이슈 선정

키워드	빈출건수
음료	3,304
가금육류	2,779
과자류	2,316
채소류	1,739
과실류	1,581
곡류	930
당류	908
소스류	534
면류	528
기타조제 농산품	414

관련 주요 이슈
인도, 알코올음료의 일부 제품 규정과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변경한 식품 안전 및 기준 개정안 발표(2024년 3월 1일 발효)
캐나다,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CED) 과다 섭취를 경고하기 위한 권고안 발표
중국, 분말 및 과립 형태로 가공된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2023년 9월 26일까지)
필리핀,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제조, 수입, 유통 금지 (2023년 6월 19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보건위원회, 가공식품에 유해한 5가지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법안 승인
태국, 초콜릿 제품의 품질, 라벨링 등에 대한 개정 고시
영국, 수입 식품(팽이버섯 등)을 대상으로 한 수입 검사 강화 관련 의견 수렴
중국, 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 고시 (2023년 개정판)

◦ 2023년 3분기 글로벌 주요 모니터링 이슈

필리핀,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제조, 수입, 유통 금지 (2023년 6월 19일부터)

필리핀 정부는 가공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총 지방량 100g 또는 100ml당 2g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는 「트랜스지방을 함유한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지침」을 2023년 6월 19일부로 전면 적용함

A. 다음의 제품을 제조, 거래, 수입,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단독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된 부분경화유(PHO)
- 부분경화유와 혼합된 유지
- 100g당 또는 100ml당 트랜스지방이 2g을 초과하는 유지
- 부분경화유 또는 고함량의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사전포장 식품

B. 'TFA-Free', '트랜스지방 0g' 또는 '트랜스지방 없음' 등과 같은 문구 및 표시는 모든 가공식품의 라벨, 마케팅 및 광고에서 사용을 금지함

C.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필리핀 식품의약국 라벨 표시 지침에 따라 라벨의 영양정보 부분에 표기되어야 함

D. 규정 위반 시, 관련 식품 제조업체의 제품 등록 인증서(CPR)를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됨

Ⅲ. 3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필리핀, 트랜스지방 함유 가공식품 제조·수입·유통 금지"에 대한 현지 전문가 Q&A

[현지 전문가 정보]

- 이름 : Jerome Espero
- 소속 :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Q1. 필리핀에서 트랜스지방(TFA)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 수입, 유통 금지 조치가 이뤄진 배경이 무엇인지요?

A1. WHO 질병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트랜스지방 과다 섭취로 인해 매년 약 3,0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보건부는 필리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 제거를 목표로 국가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이 부분경화유를 금지하고 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필리핀에 유사 규제가 없으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 시장에 범람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2. 트랜스지방 함량과 관련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가공식품 및 라벨링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사람이 섭취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에는 **단일 성분 및 원료 뿐만 아니라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의 성분으로 부분경화유(PHO)를 함유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제품의 제조, 거래, 수입 및 유통은 금지됩니다. 또한, **'TFA-Free', '트랜스지방 0g' 또는 '트랜스지방 없음' 등과 같은 문구 및 표시는 모든 가공식품의 라벨, 마케팅 및 광고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Q3. TFA(트랜스지방) 및 PHO(부분경화유)를 함유한 사전 포장 가공식품 CPR(제품등록증명서) 등록 시 필요 서류 및 요건이 무엇인가요? 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3. 필리핀에서는 식품의 수입, 유통, 판매 업체와 제품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제품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이라고 합니다. **전환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6월 18일 이후, 필리핀 FDA는 TFA 규정을 위반한 사전 포장 식품의 제조, 수입 또는 유통업체에 대해 등록, 운영 허가 또는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며 제품등록증명서도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된 특정 오일 및/또는 지방, 가공 과정을 나타내는 원료의 기술 사양서
2) 12개월 이내의 완제품 분석 증명서
3) 총 지방 100g 또는 ml당 2g 이상의 자연 발생 TFA가 함유된 사전 포장 가공식품의 경우, 해당 TFA가 자연 발생되었거나 반추동물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는 최근 분석 증명서

Q4. 트랜스지방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거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A4. 현재 필리핀에서는 트랜스 지방 금지 규정의 정착 및 안정적인 시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규정 대상 식품 범위 확대나 규제 강화에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Ⅲ. 3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2023년 3분기 한국 관련 모니터링 이슈 키워드 분석 결과

- 2023.06.01 – 2023.08.31 기준, 식품 비관세장벽 이슈 중 "Korea"를 포함한 이슈 총 711건 수집
- "Korea" 를 포함한 이슈의 키워드 빈도분석 수행, 최빈출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계 이슈의 빈출 건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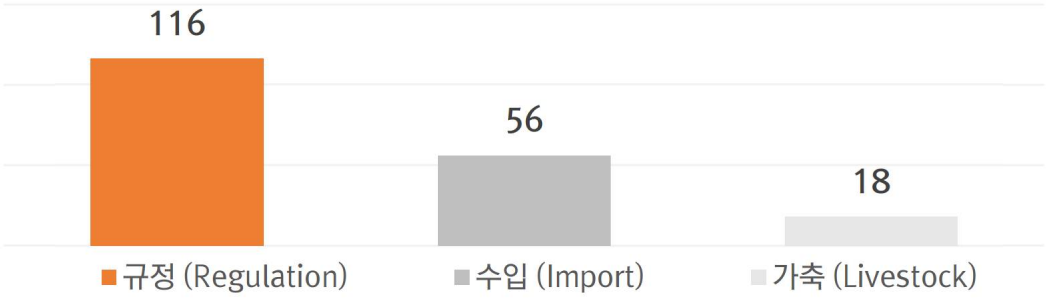

주제어	연관 키워드	연계 빈출 건수
Korea(한국)	규정 (Regulation)	116 건
	수입 (Import)	56 건
	가축 (Livestock)	18 건

※연계 빈출 건수는 주제어와 연관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이슈의 수입니다.

◦ 2023년 3분기 한국 관련 주요 모니터링 이슈

싱가포르, 2023년 7월 19일부터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지난 2022년 11월에 일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했던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2023년 7월 19일부로 재개한다고 발표함

- 싱가포르는 2022년 11월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발생한 한국 일부 지역(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충청북도 진천군 월면)에서 생산된,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달걀 포함)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2022년 6월 24일부로 수출이 재개된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해 다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임
- 규제 관련 대상 품목 : 가금류, 가금류 제품(닭고기, 오리고기, 식용 달걀 등)(*)

※ 싱가포르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 시, 필요 서류

1) 수출 가금류 작업장 등록
2)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상세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은 축산물 검역 본부의 검역 타결 협상 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Ⅲ. 3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싱가포르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에 대한 현지 전문가 Q&A

[현지 전문가 정보]

- 이름 : Noor
- 소속 :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Q1.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12월 부터 2023년 7월까지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와 금지 조치를 번갈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규제 조치 변화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A1. 싱가포르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국에서 수출 전 12개월 동안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2023년 7월 19일로, 병원성 조류 질병의 발병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어 한국산 제품의 수입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Q2. 싱가포르로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 시 지켜야 하는 주요 수입 요건이 있을까요?

A2. 한국은 멸균 처리 또는 열처리한 가금육, 식용 달걀(table egg) 및 멸균 처리된 달걀 제품(canned egg)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 조건은 4가지입니다.

1) SFA가 승인한 공급처에서 수입해야 함.(현재 한국에서 SFA 승인을 받은 공급처는 9곳임)

2) 모든 수의학적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함

4) 식품 라벨이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해야 함

Q3. 싱가포르의 식용 달걀 수입에 대한 세부 규제 조건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3. 가금류 제품과 마찬가지로 식용 달걀도 모든 수의학적 조건을 충족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식용 달걀의 경우 **SFA 달걀 수입을 승인 받은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 무리에서 유래된 무정란이어야 하며, 한국은 4개 농장이 수입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각 신선란의 위탁은 단일 농장에서 가져와야 하며, 생산 농장을 식별하기 위해 한국의 관할 당국이나 SFA가 발행한 고유 식별 코드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Q4.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국 수출 기업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 또는 요구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4. **싱가포르 식품청의 허가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입, 수출, 환적되는 육류와 수산물, 신선란 제품은 SFA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관련 품목의 수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내 관련 라이센스를 갖춘 수입업자와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각 화물에 대한 화물 통관 허가서에는 수출국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